

가정 상담

통권 49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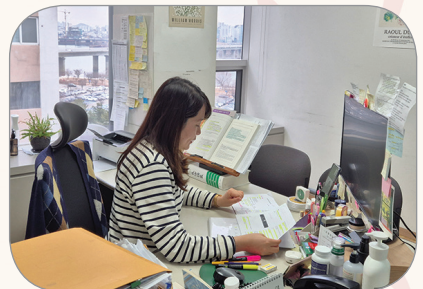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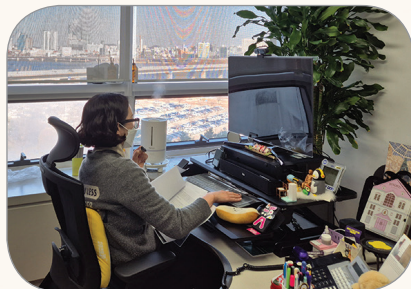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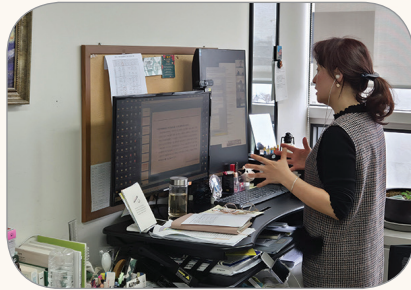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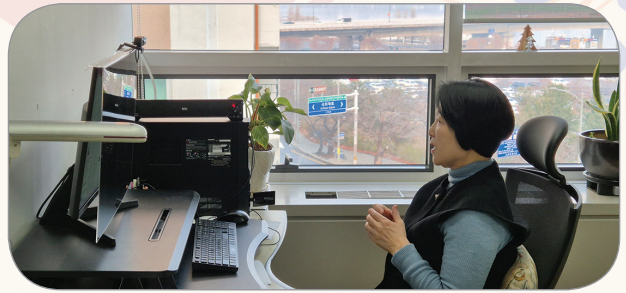
2025

02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소 교육부는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법과 생활」 교원직무연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수강생들은 이번 연수가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강의는 본소 상담위원, 변호사들이 진행하였다. (관련 기사 36번)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청 : 청렴을 약속합니다.

렴 : (염)려 마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니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SNS

트위터 ▷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orealawhome>



4	• 이달의 메시지
6	• 특집 한국의 이혼율 연구Ⅴ(2011~2020) 요약
17	• 특별기획 등지고실 Ⅷ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 ⑪
25	• 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 ⑥
27	• 가정폭력상담실
30	• 어떻게 할까요
32	• 결혼과 인생(242) 영화 이야기 슬로우 트레인 _ 김용연
34	• 좋은 책 고라니라니
35	• 현장체험 연수 소감문
36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38	• 소송구조



유튜브는 만능일까,

인터넷, SNS의 시대 - 가정은 어디로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법률구조, 사회 교육 등 상담소가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프로그램 가운데 사회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사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초창기부터 다양한 방면에서 참여의 폭을 넓히면서 상담소 사업의 안정과 시민의식의 향상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던 영역이 자원봉사 부문입니다. 지금은 대학생들의 학업과 사회 경험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변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담 관련 폭주하는 전화 안내를 몇십 년째 전담하여 주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상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이제는 옛 일이 되었지만, 상담소 도서관에 기일을 정해 봉사자들이 모여 신문 스크랩을 도와 주는 자원봉사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신문 스크랩은 가사 사건을 비롯해 상담소와 관련 있는 전문적인 영역의 기사로 오랜 시간 상담소 관계자들이나 여성, 가족 관련 연구자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부터 우리 사회에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과거 소중했던 신문 스크랩은 그저 도서관 서고의 공간을 차지하는 애물단지가 되었다가 재활용 수거함으로 보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포털 사이트의 검색란에 관련 단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불과 몇 분 만에 궁금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대화 중에 요즘 초등학생 장래 희망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이 운동선수 혹은 유튜버 등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요즘에는 검색도 유튜브로 한다거나 SNS 같은 곳에서 손 쓸 수 없는 범죄도 적지 않게 벌어진다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된 지 불과 한 세대 만에 우리 앞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되었고 이러한 현실은 개인의 삶은 물론 가정에도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를 지나 일인가구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가족 갈등과 가정문제 전반의 양상에 다양한 변화가 보이고 있으며, 근래에는 유튜브 시청이나 인터넷 게임, 도박 중독, SNS에 대한 지나친 몰입이 가족 갈등의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상담 과정에서 인터넷 게임, 동영상 시청 등의 문제가 청소년, 아동 등 미성년 자녀의 교육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점차 나이, 성별을 넘어 가족 구성원 전체의 문제가 되는 현실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인터넷 도박 혹은 게임 중독을 염려하는 아내는 물론 부모나 자녀의 편파적인 유튜브 시청 중독으로 특히 제 주변에서는 정치적 이슈가 대화의 중심이 되면 곧 가족 갈등이 표출되고 깊어진다는 한탄과 호소를 적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올해 초 옥스포드 영어사전을 발간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가 ‘뇌 썩음’(brain rot)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상담소에서 접하는 현실이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사소하거나, 하찮은 자료를 과잉 소비하면 인간의 정신적, 지적인 상태가 퇴보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저급한 온라인 콘텐츠, 특히 소셜 미디어의 과잉 소비로 초래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참 위대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소한 것에 쉽게 길들여지고 무너집니다. 그 사소한 것이 옳지 않고 해로운 것일수록 더 쉽게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 시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마치 몸에 해로운 음식이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맛과 모양을 지닌 것처럼 유튜브 같은 인터넷상의 콘텐츠도 그러하고 이러한 현상에 인간은 쉽게 무너지는 존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아직 올바른 세계관을 미처 정립하지 못한 어린이나 청소년 그리고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한 위기의 청년들, 소외된 성인, 어르신들 모두 이 같은 상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유해한 콘텐츠에 계속 노출된다면 그 사람은 물론 그가 속한 가정과 사회 나아가 국가와 세계를 위협에 빠트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위험이 더 깊어지기 전에 해로운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해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상황을 규제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함은 물론 가정에서도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위험은 크고 대처 방안은 미약해 보이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임을 잊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특집

한국의 이혼율 연구 V (2011~2020) 요약

한국의 이혼율 연구, 그 다섯 번째 발간

1911년부터 2020년까지 한 세기를 넘는 한국의 이혼율에 대한 연구 총정리

UN 인구통계연감 활용해 외국의 이혼율과도 비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하 상담소로 약칭)는 1969년 최초로 1911년부터 1966년까지 우리나라의 이혼에 관한 연구를 통계와 판례를 중심으로 집대성하여 「한국의 이혼 연구」를 출간한 바 있다. 그 이후 상담소에서는 상담소 연구자료총서로 1981년에 「한국의 이혼율 연구」(1967년~1976년), 1987년에 「한국의 이혼율 연구 II」(1977년~1986년), 2004년에 「한국의 이혼율 연구 III」(1987년~1999년), 2014년에 「한국의 이혼율 연구 IV」를 출간하였는데 이번에 앞의 연구에 이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간의 이혼율을 조사, 분석하여 「한국의 이혼율 연구 V」를 출간하게 되었다. 이로써 1911년부터 2020년까지 한 세기를 넘는 한국의 이혼율에 대한 연구가 총정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1,000명에 대한 혼인수 및 이혼수의 비율을 혼인율, 이혼율(조혼인율, 조이혼율)로 산출하였으며 인구 및 혼인, 이혼수는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의거하였다. 먼저 연도별 이혼율의 변동을 살펴본 후 지역별 현황 파악을 위해 이혼율을 다시 각 지역의 법원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아울러 외국과의 이혼율을 비교하기 위해 UN이 발행하는 인구통계연감(Demographic Yearbook)을 토대로 나라별, 대륙별로 외국의 이혼율을

조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유들을 토대로 이혼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혼한 당사자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혼당사자의 연령, 학력, 직업, 혼인생활기간, 자녀의 수를 조사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상담소에서 이뤄진 이혼상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의 가족문제를 보다 폭넓게 다루고자 하였다.

◎ 1911년~2020년 한국의 이혼율 특성

한국의 이혼율, 80년대 들어와 급격히 증가,

2003년 3.54로 최고치 기록

이후 점점 감소해

2010년에는 2.31, 2020년에는 2.08로 나타나

조이혼율의 변천을 살펴보면, 1911년부터 1938년 사이에는 0.24에서 0.65의 조이혼율을 유지하였다. 8·15 광복을 거치면서 조이혼율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6·25 전쟁 중이던 1951년에는 0.08, 1952년과 1953년에는 0.11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조이혼율은 다시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8년에는 1.11로 나

■ 전국의 혼인율 및 이혼율(19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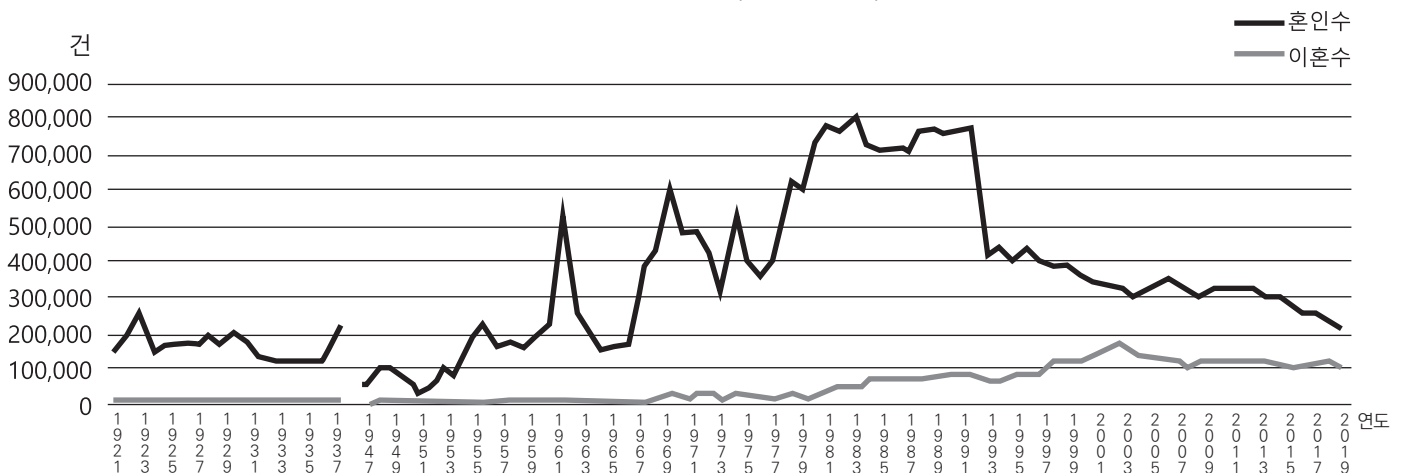
※ 1. 인구수에 대한 혼인율, 2. 인구수에 대한 이혼율(인구 1000명에 대한 비율임)

연도별	총인구수 (단위:천명)	혼인수	이혼수	인구에 대한 혼인율	인구에 대한 이혼율	혼인에 대한 이혼율	연도별	총인구수 (단위:천명)	혼인수	이혼수	인구에 대한 혼인율	인구에 대한 이혼율	혼인에 대한 이혼율
1911	13,832	85,612	5,621	6.20	0.41	6.6	1969	30,444	601,229	21,531	19.75	0.71	3.58
1912	14,576	121,993	9,058	8.37	0.62	7.4	1970	31,458	484,023	21,018	15.39	0.67	4.34
1913	15,170	131,495	9,915	8.67	0.65	7.5	1971	31,962	496,261	24,149	15.53	0.76	4.87
1914	15,621	115,725	8,976	7.41	0.57	7.8	1972	32,669	420,164	22,062	12.86	0.68	5.25
1915	15,958	102,371	7,995	6.40	0.50	7.8	1973	33,250	325,031	18,895	9.78	0.57	5.81
1916	16,309	126,918	9,761	7.78	0.60	7.9	1974	34,224	536,191	29,443	15.67	0.86	5.49
1917	16,617	136,406	10,542	8.21	0.63	7.7	1975	35,341	385,778	23,326	10.92	0.66	6.05
1918	16,697	143,980	10,498	8.62	0.63	7.3	1976	35,341	354,566	26,199	10.03	0.74	7.39
1919	16,784	143,098	9,737	8.53	0.58	6.8	1977	36,436	404,334	29,233	11.10	0.80	7.23
1920	17,264	142,122	7,982	8.17	0.46	5.7	1978	36,628	637,342	40,641	17.22	1.11	6.38
1921	17,059	155,591	7,222	9.12	0.42	4.6	1979	37,354	604,518	28,931	16.18	0.77	4.79
1922	17,208	193,918	7,284	11.27	0.42	3.8	1980	37,448	753,007	43,529	20.11	1.16	5.78
1923	17,447	258,167	8,797	14.80	0.50	3.4	1981	38,309	782,394	51,661	20.42	1.35	6.60
1924	17,619	154,809	7,041	8.79	0.40	4.5	1982	39,113	769,407	56,810	19.67	1.45	7.38
1925	19,020	171,066	7,607	8.99	0.40	4.4	1983	39,669	801,910	58,008	20.22	1.46	7.23
1926	18,615	167,409	6,988	8.99	0.38	4.2	1984	40,430	724,423	72,220	17.92	1.79	9.97
1927	18,631	174,653	6,991	9.37	0.38	4.0	1985	40,460	711,967	74,556	17.60	1.84	10.47
1928	18,667	191,816	8,218	10.28	0.44	4.3	1986	41,160	718,779	77,477	17.46	1.88	10.78
1929	18,784	172,723	8,021	9.20	0.43	4.6	1987	42,013	715,720	82,208	17.04	1.96	11.49
1930	20,438	197,563	8,894	9.67	0.44	4.5	1988	42,800	763,943	84,933	17.85	1.98	11.12
1931	19,710	182,715	7,896	9.27	0.40	4.3	1989	43,846	769,834	87,124	17.56	1.99	11.32
1932	20,037	128,258	6,568	6.40	0.33	5.1	1990	43,520	760,658	90,411	17.48	2.08	11.89
1933	20,206	124,480	5,757	6.16	0.28	4.6	1991	43,801	767,221	91,883	17.52	2.10	11.98
1934	20,513	119,014	5,050	5.80	0.25	4.2	1992	44,306	779,072	98,175	17.58	2.22	12.60
1935	22,208	121,246	5,323	5.46	0.24	4.3	1993	45,011	430,562	65,814	9.57	1.46	15.29
1936	21,374	123,693	5,278	5.79	0.25	4.3	1994	45,406	436,548	65,938	9.61	1.45	15.10
1937	21,684	124,611	5,110	5.75	0.24	4.1	1995	45,829	403,711	73,214	8.81	1.60	18.14
1938	21,951	226,510	8,152	10.32	0.37	3.5	1996	46,242	434,276	82,987	9.39	1.79	19.11
						6.25 사변시 소실	1997	46,661	397,901	95,630	8.53	2.05	24.03
1946	19,369	63,645	3,821	3.29	0.20	-	1998	46,991	396,212	122,771	8.43	2.61	30.99
1947	19,886	102,307	4,978	5.14	0.25	4.9	1999	47,542	398,074	126,815	8.37	2.67	31.86
1948	20,027	97,814	3,764	4.88	0.19	3.8	2000	47,976	368,175	127,745	7.67	2.66	34.70
1949	20,167	76,404	3,223	3.79	0.16	4.2	2001	48,289	351,967	142,030	7.29	2.94	40.35
1950	20,513	45,957	-	2.24	-	6.0	2002	48,517	331,662	151,587	6.84	3.12	45.71
1951	20,671	49,290	1,722	2.34	0.08	3.5	2003	48,823	323,698	172,822	6.63	3.54	53.39
1952	21,144	97,751	2,362	4.62	0.11	2.4	2004	49,052	314,529	139,876	6.41	2.85	44.47
1953	21,440	83,879	2,444	3.91	0.11	2.9	2005	49,267	320,893	128,944	6.51	2.62	40.18
1954	21,796	176,436	4,294	8.09	0.20	2.4	2006	49,624	337,530	125,937	6.80	2.54	37.31
1955	21,502	230,093	5,825	10.70	0.27	2.5	2007	49,268	348,229	124,225	7.07	2.52	35.67
1956	22,307	164,122	5,694	7.36	0.26	3.5	2008	49,540	330,256	116,997	6.67	2.36	35.43
1957	22,949	176,617	5,136	7.70	0.22	2.9	2009	49,773	312,093	124,483	6.27	2.50	39.89
1958	23,611	166,571	5,802	7.05	0.25	3.5	2010	50,515	326,943	116,742	6.47	2.31	35.71
1959	24,291	200,999	6,702	9.10	0.28	3.0	2011	50,734	331,543	114,707	6.53	2.26	34.60
1960	24,989	222,627	7,016	8.91	0.28	3.1	2012	50,948	329,220	114,781	6.46	2.25	34.86
1961	25,700	519,808	11,693	20.23	0.45	2.2	2013	51,141	325,016	115,725	6.36	2.26	35.61
1962	26,432	255,452	9,709	9.66	0.37	3.8	2014	51,327	307,489	115,889	5.99	2.26	37.69
1963	27,184	200,287	9,610	7.37	0.35	4.8	2015	51,529	306,419	110,072	5.95	2.14	35.92
1964	27,958	149,219	8,982	5.34	0.32	6.0	2016	51,696	287,605	108,853	5.56	2.11	37.85
1965	28,670	170,640	8,150	5.95	0.28	4.8	2017	51,778	270,995	107,523	5.23	2.08	39.68
1966	29,207	169,117	8,659	5.79	0.30	5.1	2018	51,826	264,866	110,129	5.11	2.12	41.58
1967	29,471	385,546	14,464	13.08	0.49	3.75	2019	51,849	246,662	112,256	4.76	2.17	45.51
1968	29,854	426,289	15,606	14.28	0.52	3.66	2020	51,829	220,421	107,706	4.25	2.08	4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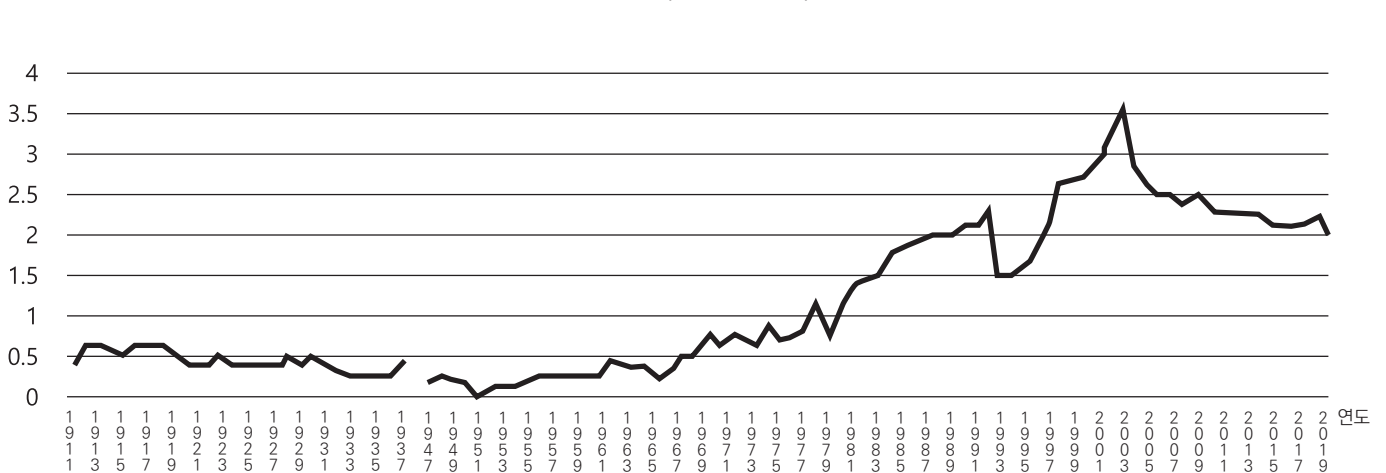
※ 한국의 이혼율 연구, II, III, IV 참조

- 1) 인구수에 관한 기록도 경제기획원 통계 외에 UN연감에 의존하여야 할 경우가 있었고 혼인수와 이혼수의 기록은 일정 당시의 조선총독부 발행 「調査月報」에 기재된 수치(1911~1928)를 얻고 1946년부터 1966년까지는 법원행정처 자료로서 한국이혼율을 산출하여 「한국이혼연구」에 1911년부터 1966년까지의 이혼율을 발표하였던 것이다. 계속된 이번 이혼율 조사에서는 인구수에 관한 경제기획원 통계와 이혼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자료에 의거하여 1967년부터 1976년까지의 이혼율을 산출하여 1911년부터 1976년까지의 이혼율을 파악하였다; 이태영, 「한국의 이혼율 연구」, 1981년, 9면.
- 2) 인구에 관한 경제기획원의 통계와 이혼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자료에 의거하여, 1977년부터 1986년까지의 전국 이혼율을 산출하였다; 이태영, 「한국의 이혼율 연구 II」, 1987년, 4~5면.
- 3)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의거하여 1987년부터 1999년까지 전국에 신고된 혼인건수와 이혼건수를 집계하였으며, 다시 인구 1,000명에 대한 혼인수 및 이혼수의 비율을 각각 혼인율 및 이혼율로 산출하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의 이혼율 연구 III」, 2004년, 20면.
- 4)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의거하여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에 신고된 혼인건수와 이혼건수를 집계하였으며, 다시 인구 1,000명에 대한 혼인수 및 이혼수의 비율을 각각 혼인율 및 이혼율로 산출하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의 이혼율 연구 IV」, 2013년, 23면.

전국의 혼인수 및 이혼수(1911~2020)



전국의 이혼율(1911~2020)



타났다. 1980년대 이후에는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여 1990년에는 2.08이 되었고, IMF 직후인 1998년에는 2.61로 나 타났다. 경기 장기침체가 이어지면서 2002년 3.12를 넘어 서 2003년에는 최고치인 3.54를 기록하였다.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리먼사태로 미국발 경제위기가 시작된 2008년 2.36에서 2009년 2.50으로 다시 증가하였 다. 그러나 한해만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2010년에는 2.31, 2020년에는 2.08까지 떨어졌다. 1911년 부터 2020년까지 110년 동안 6·25사변으로 인해 자료가 소 실된 해를 제외하고 조이혼율이 가장 낮았던 해는 1951년 으로 0.08이었고 가장 높았던 해는 2003년으로 3.54였다.

◎ 2010년-2020년 한국의 이혼율 특성

1. 2010년대 한국의 이혼율 감소는

혼인 건수 감소가 영향 끼친 것으로 보여

혼인에 대한 이혼율은 증가해

2010년대 한국의 조이혼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2011년에 조이혼율은 2.26이었으나 2015년에 는 2.14로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2.08로 더욱 감소하였 다. 실제 이혼 건수도 2011년에는 114,707건이었는데 2015 년에는 110,072건, 2020년에는 107,706건으로 나타나 감 소 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혼인율 감소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인구수를 살펴보면, 2011년 5,073만 명에서 2012년 5,094만 명, 2013년 5,114만 명, 2014년 5,132만 명, 2015 년 5,152만 명, 2016년 5,169만 명, 2017년 5,177만 명, 2018년 5,182만 명, 2019년 5,184만 명, 2020년 5,182만 명으로 2019년까지는 계속 증가하였다.

반면, 전국의 혼인 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331,543 건에서 2012년 329,220건, 2013년 325,016건, 2014년 307,489건, 2015년 306,419건, 2016년 287,605건, 2017 년 270,995건, 2018년 264,866건, 2019년 246,662건,

2020년 220,421건으로 계속해서 감소하였다. 2011년에 비해 2020년에는 혼인 건수가 331,543건에서 220,421건 으로 약 33.5% 감소하였다.

한편, 전국의 이혼 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114,707 건에서 2012년 114,781건, 2013년 115,725건, 2014 년 115,889건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다가 2015년 110,072건, 2016년 108,853건, 2017년 107,523건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2018년 110,129건, 2019년 112,256건 으로 다시 증가하였다가 2020년 107,706건으로 다시 감소 하였다.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11년에 비해 2020년에는 이혼 건수가 114,707건에서 107,706건으로 6.1% 감소하였다.

조혼인율은 2011년 6.53에서 2015년 5.95, 2020년 4.25로 감소하였고 조이혼율 역시 2011년 2.26에서 2015 년 2.14, 2020년 2.08로 감소하였다. 인구는 증가한 반면 혼인 건수는 감소하였고, 이혼의 전제가 되는 혼인이 감소 하였으므로, 혼인율의 감소가 이혼율 감소에도 영향을 끼 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혼인에 대한 이혼율을 살펴보면, 2011년 34.60에 서 2015년 35.92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48.86으로 더욱 증가해 혼인 건수 대비 이혼 건수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대비 이혼 건수가 감소해 수 치상으로는 조이혼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혼인 건 수 대비 이혼 건수는 오히려 증가해 부부의 갈등과 이혼에 대한 욕구는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되면서 조이혼율은 크게 증가하였다(97년 2.05→98년 2.61). 이러한 현상은 2003년까지 이어져 2003년에는 조이혼율이 3.54로 최고 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경기가 잠시 회복되면서 이혼 건수도 감소해 2008년에는 조이혼율이 2.36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러더 스 파산을 필두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2009년 다 시 조이혼율이 2.50으로 상승하였다. 이후에는 경제적 위

기가 계속되면서 혼인 건수 자체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사회 경제적 사정과 혼인 및 이혼이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협의이혼 비율이 재판이혼 비율보다 월등히 높아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 도입과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등이 협의이혼 증감에 영향 끼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처리된 총 이혼 건수는 1,117,641건이었다. 이 중 협의이혼은 909,445건으로 81.4%를 차지하였으며, 재판이혼은 208,196건으로 18.6%를 차지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협의이혼의 경우 2011년 91,022건에서 2014년 93,708건으로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는 88,440건으로 감소하였다. 2018년 90,806건, 2019년 92,429건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87,606건으로 다시 감소해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2011년 23,685건에서 2017년 19,083건으로 2014년을 제외하고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다가 2018년 19,323건, 2019년 19,827건, 2020년 20,100건으로 후반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2011년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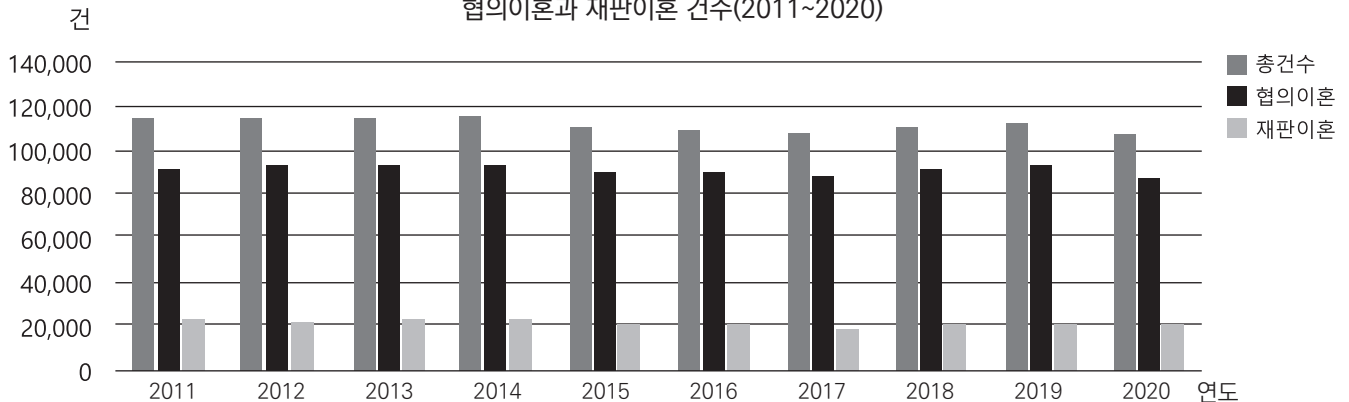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건수의 증감은 협의이혼 시 이혼숙려기간 도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숙려제도는

2005년 3월 2일 서울가정법원에서부터 시범 실시되었는데 제도 도입 전에는 하루나 이틀이면 이혼 접수부터 확인까지 가능했고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혼숙려제도가 시범 실시되면서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 확인이 가능해졌다.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화끈에 이혼하려 했던 이들이 협의이혼에 좀더 신중을 기하게 되었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면 재판이혼을 통해 제대로 된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경향도 반영되어 2005년 87.7%까지 올라갔던 협의이혼 비율이 2010년에는 78.7%까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오래 가지는 않아 2011년부터는 다시 협의이혼이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78.7%까지 감소했던 협의이혼 비율은 2011년 79.4%로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81.7%, 2018년에는 82.5%까지 더욱 증가하였다. 과거에 비해 협의이혼 절차가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재판이혼보다는 기간과 비용면에서 부담이 덜해 가급적이면 협의를 통해 이혼하고자 하는 의사가 다시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협의이혼 이혼숙려기간 동안 교육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를 충분히 숙고할 수 있게 되고 2009년 8월 도입된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으로 별도의 재판 없이 양육비에 대해 그 자체로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을 인정받게 된 것도 협의이혼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건수(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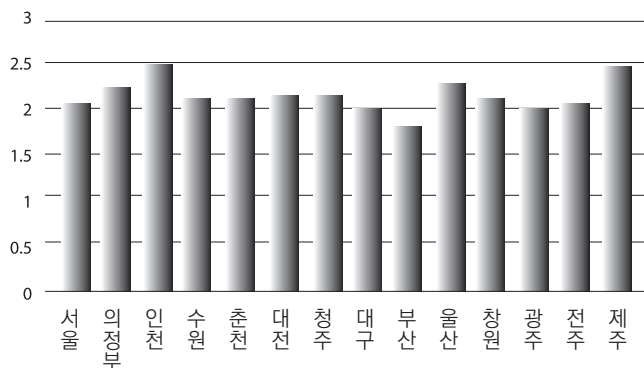


3. 2011-2020까지 지역별 조이혼율, 인천이 가장 높고, 부산이 가장 낮아 서울, 대구, 광주, 제주 재판이혼 많아

법원행정처가 발행하는 사법연감에 의거하여 전국 각 법원 관할별로 인구수 및 이혼 건수를 조사하여 조이혼율을 산출해 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조이혼율은 인천이 2.58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제주 2.53, 울산 2.37, 의정부 2.31, 대전 2.21, 청주 2.21, 수원 2.18, 춘천 2.18, 창원 2.18, 서울 2.11, 광주 2.10, 전주 2.10, 대구 2.0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이 1.8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법원 관할지역별 이혼 총수를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재판이혼보다 협의이혼이 압도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서울, 대구, 광주, 제주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재판이혼 비율이 높았고,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울산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그 비율이 낮았다.

법원 관할별 이혼율(2011~2020)



◎ 2011년-2020년 외국의 이혼율 변화

* 인구 1,000명에 대한 이혼수의 비율(조이혼율)을 이혼율로 산출하였으며 각국의 이혼율은 UN이 발행하는 인구통계연감(Demographic Yearbook)^{5) 6) 7)}에 의거함.

1. 아프리카에서는 Egypt, 남미에서는 Suriname, 북미에서는 Aruba, 아시아에서는 Kazakhstan, 유럽에서는 Russian Federation, Belarus, 오세아니아에서는 Guam의 조이혼율 높아

아프리카(AFRICA) 각국의 조이혼율을 살펴보면, Egypt는 2011년 1.9였는데 서서히 증가해 2019년에는 2.3으로 나타났다. Maurice는 2011년 1.4였고,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다 2018년 1.9까지 상승하였으나 2020년에는 1.6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Seychelles 역시 2011년 1.9로 시작해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다 2017년 2.2까지 상승하였으나 2020년에는 1.7로 다시 감소하였다.

남미(AMERICA, SOUTH)에서는 Suriname의 조이혼율이 비교적 높았다. 2011년 Suriname의 조이혼율은 0.9였는데 서서히 상승해 2018년에는 1.5까지 올랐으나 2020년에는 1.2로 감소하였다. Peru는 2011년 0.2였고, 2016년 0.5까지 올랐으나 2020년 0.2로 감소하였다. 그 외 Venezuela는 2014년 0.9였는데 점점 감소해 2019년에는 0.2까지 떨어졌다.

북미(AMERICA, NORTH)에서는 Aruba, Bermuda, Puerto Rico, Saint-Martin, United States of America, Cuba의 조이혼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011년에는 Aruba가 4.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Puerto Rico 3.6, Bermuda·Saint-Martin·United States of America가 각 2.8이었다. 2020년에도 Aruba가 2.6으로 가장 높았는데 다음은 Greenland 2.4, Costa Rica 2.3, Cuba 2.0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 가장 낮았던 곳은 Guatemala로 0.3이었고, 2020년 가장 낮았던 곳도 Guatemala로 0.2였다.

유럽(EUROPE)에서는 Belarus, Latvia, Lithuania, Republic of Moldova, Russian Federation, Ukraine

5) <https://unstats.un.org/unsd/demographic-social/products/dyb/documents/dyb2015/table25.pdf> 참조

6) <https://unstats.un.org/unsd/demographic-social/products/dyb/documents/dyb2019/table25.pdf> 참조.

7) <https://unstats.un.org/unsd/demographic-social/products/dyb/documents/DYB2020/table24.pdf> 참조.

의 조이혼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011년에는 Russian Federation이 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Belarus 4.1, Latvia·Ukraine 각 4.0, Lithuania 3.4, Republic of Moldova 3.1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Belarus가 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Republic of Moldova 3.3, Ukraine 2.9, Denmark·Latvia·Lithuania 각 2.7로 나타났다. 2011년 가장 낮았던 곳은 Malta로 0.1이었고, 2020년 가장 낮았던 곳도 Malta로 0.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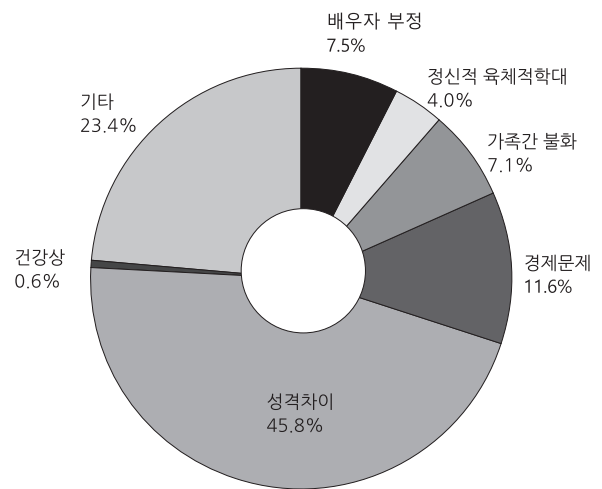
오세아니아(OCEANIA)에서는 Guam의 조이혼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11년 Guam은 5.5였고, 계속 높은 비율을 유지하다 2019년 4.3로 나타났다. Australia는 2011년에 2.2였고, 2020년에는 1.9였다. New Zealand는 2011년에 2.0이었고, 2020년에는 1.5였다. 그 외 American Samoa가 있는데 2011년에는 1.1, 2020년에는 1.4였다.

아시아(ASIA)에서는 Cyprus, Jordan, Kazakhstan, 한국의 조이혼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011년에는 Kazakhstan이 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Cyprus·Jordan·한국이 각 2.3이었다. 2020년에도 Kazakhstan이 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Iran 2.2, Cyprus·Georgia·한국이 각 2.1이었다. 2011년 가장 낮았던 곳은 Qatar와 Uzbekistan으로 각 0.6이었고, 2020년 가장 낮았던 곳은 Vietnam으로 0.2였다. 한편, 1987년에는 조이혼율이 한국 0.92, 일본 1.29로 일본이 한국에 비해 높았다. 이후 1994년까지는 일본이 계속해서 높았으나 1996년에 한국 1.75, 일본 1.65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후 2001년에는 한국이 2.9, 일본이 2.3이었고, 2011년에도 한국이 2.3, 일본이 1.8로 한국이 일본보다 높았다. 2011년 이후 두 나라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20년에도 한국은 2.1, 일본은 1.5로 나타나 1996년 이후로는 한국이 계속해서 일본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 2011년~2020년 한국의 이혼 실태⁸⁾

1. 이혼 원인 - 성격차이, 기타, 경제문제 순

2011년부터 2017년⁹⁾까지 신청서에 기재된 이혼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성격차이가 45.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기타 23.4%, 경제문제 11.6%, 배우자 부정 7.5%, 가족 간 불화 7.1%, 정신적·육체적 학대 4.0%, 건강상 문제 0.6%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 원인(2011~2017)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성격차이, 기타, 경제문제, 배우자 부정, 가족 간 불화, 정신적·육체적 학대, 건강상 문제 순이었으나 2015년에는 배우자 부정과 가족 간 불화가 동일하게 7.3%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가족 간 불화가 배우자의 부정보다 더 많아 성격차이, 기타, 경제문제, 가족 간 불화, 배우자 부정, 정신적·육체적 학대, 건강상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배우자 부정과 가족 간 불화가 다시 7.1%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다른 사유 간 순위 변화는 없었다.

2011년과 비교해 볼 때 2017년에는 배우자 부정(8.2%→7.1%), 정신적·육체적 학대(4.7%→3.6%), 경제문제(12.4%→10.1%), 성격차이(45.5%→43.1%) 등 비교적 명확한 사유들은 비율이 감소한 반면, 기타 사유(21.4%→

8)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의거하여 분석함.

9) 사법연감의 이혼 사유별 비교에 의거하여 분석하였으나 2018년 이후부터는 사법연감의 기재 대상에서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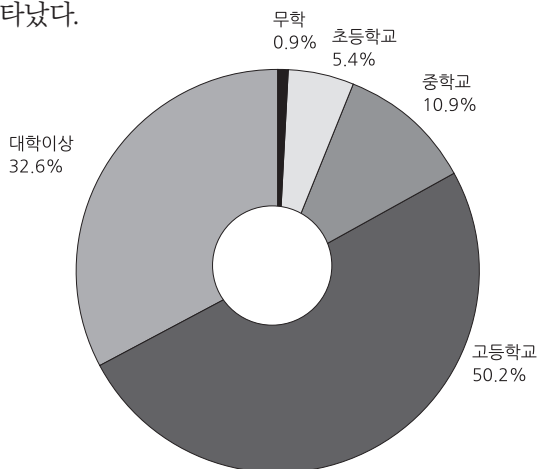
28.4%)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이혼만 분석대상으로 삼았던 선행연구에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이혼 사유를 살펴보면, 배우자 부정, 악의의 유기, 본인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같이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할 수 있는 뚜렷하고 명확한 사유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재판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까지 분석대상에 포함시킨 2007년부터는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가족 간 불화와 같이 일방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유가 주를 이뤘다. 이는 당사자들이 합의만 하면 상대의 유책성 없이도 이혼이 가능한 협의이혼의 절차상 특징이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런데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기타 사유의 비중이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가족 내에서 다양한 갈등 원인들이 나타남에 따라 부부 간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명확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회복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면 이혼을 감행하는 경향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 교육정도 - 고졸, 대졸 이상, 중졸 순

이혼사건당사자 쌍방 총 2,066,258명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고졸이 50.2%(1,038,233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대졸 이상 32.6%(673,390명), 중졸 10.9%(226,050명), 초졸 5.4%(110,878명), 무학 0.9%(17,707명)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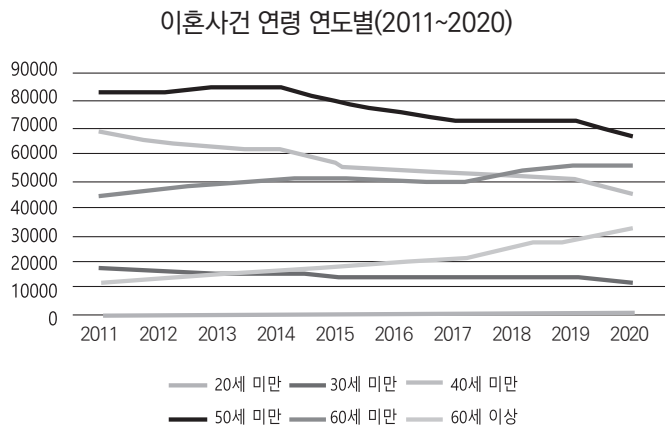


이혼사건 교육정도별(2011~2020)

3. 연령 - 50세 미만, 40세 미만, 60세 미만 순¹⁰⁾

노년 이혼 비율 비약적으로 증가

이혼사건당사자 쌍방 총 2,215,860명의 연령을 살펴보면, 50세 미만이 35.1%(777,387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40세 미만 25.7%(569,597명), 60세 미만 22.9%(506,602명), 60세 이상 9.3%(206,986명), 30세 미만 6.9%(152,585명), 20세 미만 0.1%(2,703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았던 연령층은 50세 미만으로 40대였는데 이들의 비율은 2011년 36.4%에서 2020년 31.5%로 감소하였다. 한편, 60세 이상 비율은 2011년 5.9%에서 2020년 15.2%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를 통해 노년 이혼의 비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혼인생활 기간

- 20년 초과, 4년 이내, 5년 초과 9년 이내 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집계된 이혼사건당사자 부부 총 1,107,930쌍의 혼인생활 기간을 살펴보면, 20년 초과가 30.4%(336,894쌍)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4년 이내 22.9%(253,959쌍), 5년 초과 9년 이내 18.7%(207,100쌍), 10년 초과 14년 이내 14.4%(159,489쌍), 15년 초과 19년 이내 13.6%(150,488쌍)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이혼율 연구 IV」에서 (2007년~2010년)의 조사 기간에는 20년 초과가 22.4%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혼인 기간 20년 넘는 부부가 파탄에 이르는 비율이 갈수록 증가

10) 연령별 이혼 건수는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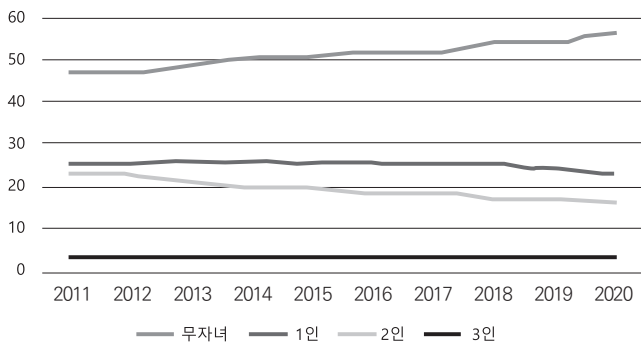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미성년 자녀 유무 - 없음, 1명, 2명 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집계된 이혼사건당사자 부부 총 1,096,694쌍의 미성년 자녀구성을 살펴보면, 없음이 51.3% (562,865쌍)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1명 25.3% (277,963쌍), 2명 19.8%(216,989쌍), 3명 이상 3.5%(38,877쌍) 순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경향으로 인해 이혼 시 무자녀인 경우가 점차 증가(이혼 시 무자녀 비율 2011년 47.2%→2020년 56.6%)하고는 있으나 2020년에도 1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가 23.1%, 2명인 경우가 16.9%, 3명인 경우도 3.4%에 달해 이혼은 부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혼 후에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이행 등과 관련해 최대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혼사건 미성년 자녀수(2011~2020)



6. 직업 - 무직·가사·학생,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사무종사자 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집계된 이혼사건당사자 쌍방 총 2,215,860명의 직업을 살펴보면, 무직·가사·학생이 27.7%(614,766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19.9%(441,141명), 사무종사자 11.6%(256,400명),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0.0%(221,551명), 기타 8.9%(196,533명), 단순노무종사자 7.6%(168,035명),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5.0%(111,653명), 관리자 4.6%(101,279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9%(64,310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1.8%(40,192명)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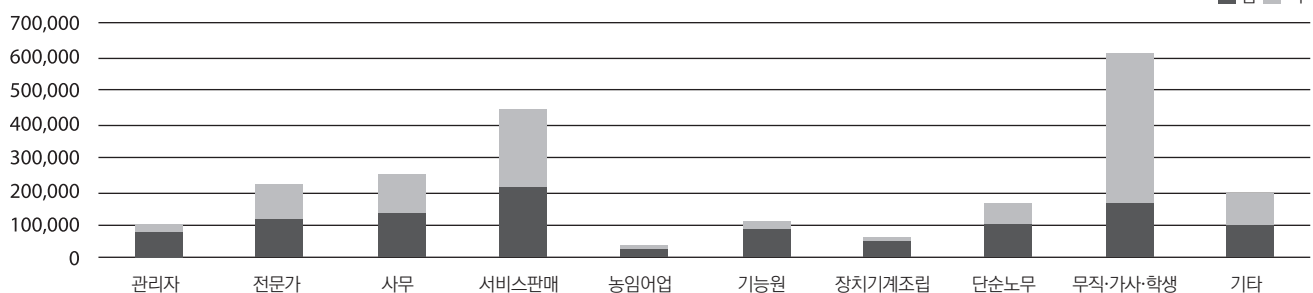
한편, 사법연감 체제상 가사를 무직 및 학생과 같은 군으로 분류해 놓았는데 이는 가사활동을 별도의 직업군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무직 및 학생 등과 같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2011년-2020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이혼상담

1. 이혼상담, 여성이 남성보다 3.3배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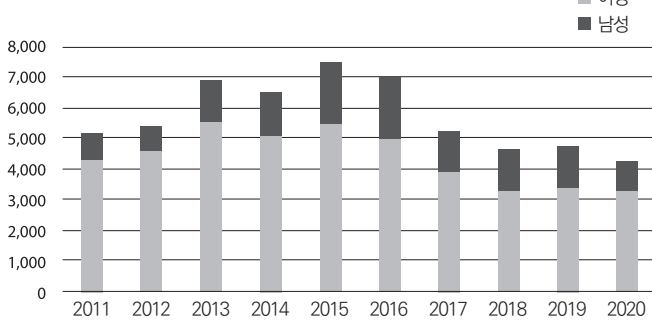
2011년에서 2020년까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면접으로 처리한 이혼상담 건수는 57,304건이었다.

이혼사건 직업별(2011~2020)



여성은 43,948명으로 76.7%, 남성은 13,356명으로 23.3%를 차지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3.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이 혼인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소를 찾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할 것이다.

이혼상담 건수 및 성별(2011~2020)



2. 이혼상담 원인

남녀 모두 기타사유가 가장 많아

다음으로 여성은 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남성은 아내의 가출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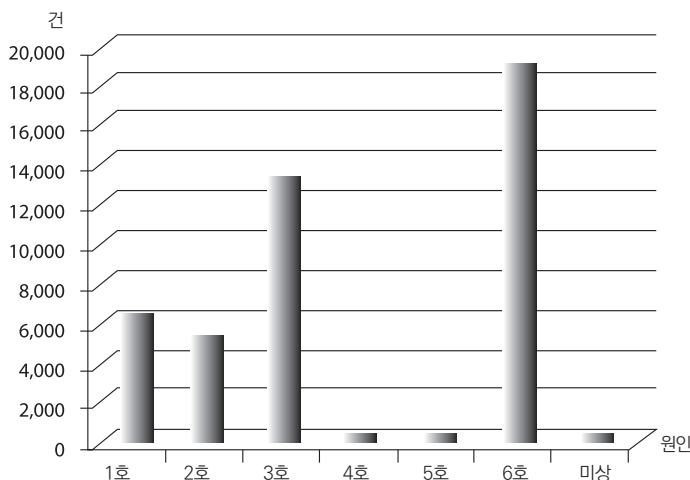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은 기타(43.0%), 배우자와 그 부모로부터 부당 대우(30.2%), 배우자의 부정(14.7%), 배우자의 가출(11.7%), 생사불명(0.2%), 내 부모에 대한 부당 대우(0.1%) 순으로, 남성은 기타(58.5%), 배우자

의 가출(20.2%), 배우자의 부정(10.5%), 배우자와 그 부모로부터 부당 대우(10.4%), 생사불명(0.3%), 내 부모에 대한 부당 대우(0.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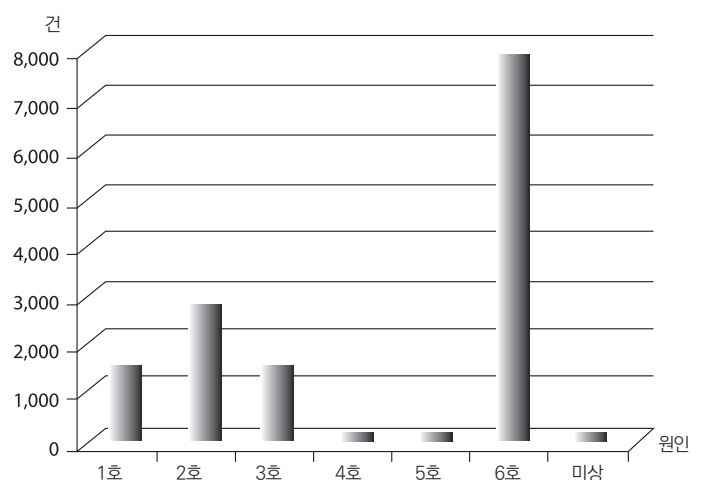
남녀 모두 기타 사유가 가장 많았다. 이는 과거에는 외도나 폭행, 가출과 같이 상대방에게 뚜렷한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주로 이혼을 고민하였으나 근래 들어서는 성격차이나 대화단절, 경제갈등과 같이 일방에게 책임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에는 이혼을 고민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에는 ‘기타’ 사유 다음으로 ‘배우자와 그 부모로부터 부당 대우’로 인한 상담이 많았다. 특히 2020년에는 ‘기타’ 사유보다 ‘배우자와 그 부모로부터 부당 대우’로 인한 상담이 더 많았고 그 비율도 거의 절반인 48.3%에 달하였다. 부당 대우의 주된 양상은 신체적 폭력인데 이를 통해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남편 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이혼 상담을 해온 여성들이 증가한 데에는 여성들이 폭력에 대응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과거에는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해도 외부에 알리거나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근래에는 상담을 받고 고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졌는데 이러한 태도의 변화가 이유로 보인다.

이혼상담 원인별(여성) (2011~2020)



이혼상담 원인별(남성) (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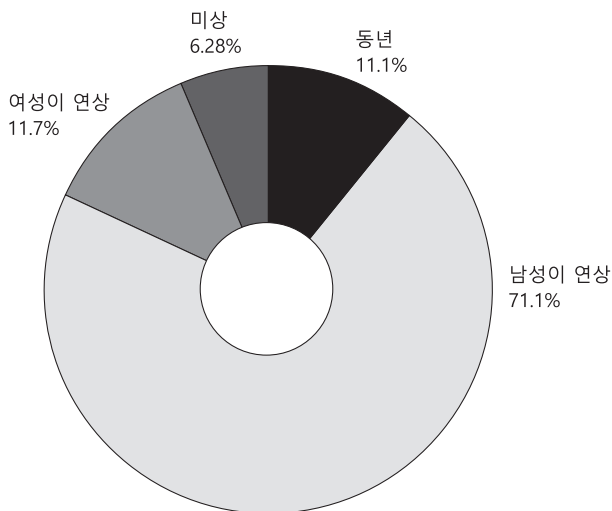


남성의 경우에는 ‘기타’ 사유 다음으로 ‘배우자의 가출’이 많아 여성과 차이를 보였다. 아내의 가출을 호소한 비율이 2013년에는 26.7%까지 상승하였고, 2020년에도 23.0%로 나타나 상당수의 남성들이 아내의 가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상담을 통해 보면, 가출에 앞서 아내의 외도나 경제문제, 정서적 단절 등 다양한 원인들이 선행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제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았는데 아내가 과소비나 빚 등을 이유로 카드대금을 돌려막다가 결국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집을 나가 잠적했다며 이중고를 호소해 온 경우도 있었다.

3. 이혼상담 연령차이, 남성이 연상인 경우 71.7%

연령차이를 살펴보면, 부부의 연령이 같은 경우는 11.1%, 남성이 연상인 경우는 71.1%, 여성이 연상인 경우는 11.7%, 미상 6.2%로 나타났다.

남성이 연상이 경우는 3-4년 차이가 28.1%로 가장 많았고, 여성이 연상인 경우는 1-2년 차이가 57.1%로 가장 많았다.



부부의 연령 차이(이혼) (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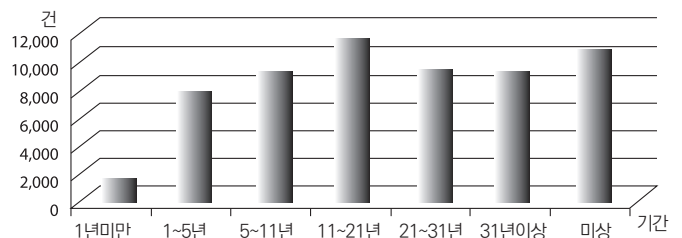
4. 노년이혼 상담 큰 폭으로 증가

이혼상담을 한 내담자 57,304명을 혼인생활 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 미만 2.2%, 1년 이상-5년 미만 13.1%, 5년 이상-11년 미만 15.6%, 11년 이상-21년 미만 19.5%, 21년 이상-31년 미만 15.8%, 31년 이상 15.5%, 미상 18.3% 등으로 나타났다. 혼인생활 기간이 11년 이상 21년 미만인 경우가 19.5%(11,193명)로 가장 많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혼인 기간 31년 이상인 경우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31년 이상인 경우 2011년 11.1%, 2012년 14.3%, 2013년 13.3%, 2014년 14.6%, 2015년 9.6%, 2016년 17.1%, 2017년 19.6%, 2018년 20.7%, 2019년 21.2%, 2020년 17.9%로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상승하였고, 2011년 11.1%에서 2019년 21.2%로 크게 증가하였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년층에서도 배우자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적극적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이혼을 원해도 사회적 편견이나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많이 망설이는 양상을 보였으나 사회적 시각이 변하고 연금 분할 제도 도입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느 정도 가능해짐에 따라 근래에는 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이혼을 통해 여생을 주체적, 독립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담을 통해 이혼 사유를 살펴보면, 노년기에 이르러 새로운 갈등이 야기된 경우도 있었으나 혼인 초부터 있어왔던 갈등이 혼인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경우가 더 많았다.

혼인생활 기간별(이혼) (2011~2020)



김진영 상담위원

특별기획

가정폭력예방 지침* 동지교실 VIII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 (II)

제 9 강 일상을 무너뜨리는 중독문제

■ INTRODUCTION

중독이란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화학 물질에 신체가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로 정의된다. 중독은 결코 스스로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독은 물질에만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행위와 같이 비물질적인 것에 중독될 수도 있다. 중독의 대상이 물질이던 비물질이던 간에 이러한 중독은 자기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변인들, 특히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가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9강에서는 중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증상이 악화되는지, 중독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이렇게 발생한 중독문제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특히 가족관계에서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알코올 문

제가 몹시 만연하며, 알코올 문제는 가족불화 원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알코올 문제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 POINT

1. 서론

보통 중독은 정신적 중독을 말하는데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박적인 상태에서 약물 혹은 술과 같은 물질이나 도박, 게임과 같은 행위 등을 찾게 되는 것을 일컫는다. 현재는 '의존'이라는 개념보다 '중독'이라는 개념을 더 많이 쓴다. '의존'은 의존하는 물질의 용량이 증가해야 하고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신체 증상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중독'은 강박적으로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을 강조한다.

* 상담소는 일찍부터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의 문제를 제기하여 가정폭력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가정폭력행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및 중단, 재발방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족관계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동지교실 강좌는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통하여 법적 처분을 이행하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자기성찰과 태도변화를 도움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는 데 매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가정폭력예방지침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 상담소는, 이번에 8차로 「동지교실 -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를 발행하였다.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본 상담소에서 진행한 '동지교실' 강의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 지침서는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을 챙기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것이기에 <가정상담>에도 이 자료를 게재한다.

특히 물질에 중독된 경우는 의존이나 남용이 아닌, ‘물질사용장애’라고 표현하고 있다. 약한 수준일 경우 경도(Mild), 어느 정도 수준일 경우 중등도(Moderate), 심각한 수준일 경우 중증도(Severe)로 심각도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중독의 진단기준에 갈망이 추가되었다. 갈망의 존재 유무에 따라 중독문제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 게임 중독, 담배 중독(니코틴중독) 등도 중독문제 안에 새로 포함되고 있다.

2. 본론

(1) 물질사용장애

여기에서 ‘물질(Substance)’이란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는 물질이다. 뇌에서는 이러한 물질에 반응하여 과도하게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로 인해 그 순간에는 쾌감을 느끼지만 그 물질이 없어지면 불쾌해지고 공허하고 힘들어지는 상태가 된다. 그런 상태에서 해당 물질이 다시 들어가면 뇌에서 다시 인위적으로 쾌감을 느끼게 되면서 그 물질에서 멀어지기 어려워진다. 물질사용장애는 이러한 중독을 일으키는, 뇌에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에 계속해서 사로잡히는 장애이다. 약물 외에도 환각이나 각성효과를 갖는 가스, 본드, 신나 등 화학약품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물질남용’은 약물을 비의학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ADHD(주의력결핍집행장애) 진단을 받으면 암페타민 계열의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이런 약들은 마약류에 속한다. 이들은 질병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중독될 수도 있어서 신체기능이나 건강에 해로운 물질로 다가오게 된다.

다음으로 ‘물질오용’은 생체에 영향을 미치는 처방된 약을 지시대로 사용하지 않고 양이나 횟수를 늘려서 강도나 방법을 다르게 이용하는 것이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더 추가해서 먹으면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내성’은 초반에는 어느 정도 용량의 물질을 썼을 때 충분

히 만족되었으나, 그만큼의 만족을 계속해서 느끼려면 물질의 용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뜻한다. 용량이 늘어나야 이전에 봤던 효과를 보게 되기에 용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다. 내성이 생겼다는 것은, 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비정상적으로 저하되면서 정상 상태에서 일정 작용을 일으키는 용량을 사용해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용량을 늘려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항불안제의 경우에도 불안장애인 사람이 약에 의존하고 약효가 떨어지면 또 약을 찾아서 약에 중독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급적 항불안제보다는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정말 필요할 때만 항불안제를 처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내성은 비슷한 종류의 다른 약물에도 생겨서 해당 약물은 처음 쓰는데도 불구하고 양을 늘리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암페타민 종류에 내성이 생기면 암페타민 계열은 일정량 이상으로 쓰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금단현상’이란 물질을 사용하다가 중지하면 몸에서 견디기 힘든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특정 물질을 사용하다가 급작스럽게 체내 혈중농도에서 그 물질이 감소되면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 금단현상이 발생하면 온몸에 이상이 생기고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중독에는 유해 물질에 의한 신체 증상인 신체적 중독(Intoxication)과 마약과 같은 약물 남용에 의한 정신적 중독(Addiction)이 있다. 사람은 중독이 되면 인격의 파괴, 손상이 나타나 예민하고 까칠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민감해지면서 시비를 걸고 자신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합리화한다. 또 모든 일을 남 탓으로 돌리고 성격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모습이 나타난다. 앞에서 보았듯이 물질에 중독되면 내성과 금단현상이 생겨서 중독된 물질을 강박적으로 찾게 되며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고 사용을 줄이려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다. 약물이나 술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니 인간이 가진 에너지를 일상 생활, 사회생활을 하는데 골고루 분산해서 쓰지 못하고 중독된 생활을 유지하는 시간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면서 ‘신체적 의존’이 나타나는데 신체적 의존은 그

물질이 있어야만 정상적인 생리기능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 물질이 없으면 손이 떨리고 몸이 빠근하고 제대로 못 움직인다. 그 물질이 들어가야만 손이 떨리지 않고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물질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몸이 기능하지 않는 것이 신체적 의존이다. 반면 ‘정신적 의존’은 그 물질을 정기적으로 투여하고 싶은 심리적 욕구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강화’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물질이 들어가면 고통이 완화되는 느낌을 받게 되므로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이다, 물질을 사용하니 이득이 생긴다고 여기며 그 물질을 찾게 되는 것이다.

중독 상태에서는 ‘갈망’도 발생한다. 갈망이란 특정 물질과 관련된 냄새, 장면, 상황 등이 주어지면 계속 조건화된 반응처럼 그 물질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다. 반주로 술을 자주 마신 사람은 누군가가 김치찌개를 끓여 그 냄새만 나도 술을 떠올리는데 이 역시 일종의 갈망이다. 또 땀 흘리고 난 상황, 열심히 일한 상황에서는 시원한 맥주 한잔, 차가운 소주 한잔 등이 생각나는 것도 갈망의 예이다.

‘공동의존’은 한 사람의 알코올이나 약물 의존이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쳐 가족도 같이 물질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본인이 반주를 하다 보니 배우자도 같이 술에 의존하게 되고, 계속 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공동의존이라고 말한다.

중독자 대부분은 자신의 중독증상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초래하는데도 물질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될 때 해로운 사용을 멈추지 못한다. 또한 그들 대부분은 이중진단과 공존질환을 갖고 있다. 즉 중독문제를 가진 사람은 중독문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격 문제나 우울증과 같은 기분 문제 또는 불안장애를 같이 가진 경우가 많다. 특히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들은 중독문제뿐 아니라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성격적 어려움을 같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이 많이 가진 성격장애는 편집성 성격장애로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의심하는 것이 특징이다(친절하게 해줘도 의도가 있을 거야, 나를 해롭게 하기 위해 저렇게 사전 준비를 하는 거야 등). 이렇게 사람에게 대한 불신이 팽배한 편집적 성격을 가진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성격 문제가 가중되면서 의처증이나 의부증, 심각한 망상장애 등의 모습이 흔하게 나타난다.

중독문제의 과정은 초기-중기-후기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초기에는 호기심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물질을 시작하는데 처음엔 오히려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나에게 물질이 도움을 주는 것이라 느낀다. 하지만 점점 같은 양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물질을 남용하게 되고 이를 숨기고 몰래 그 물질을 취하게 된다. 또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하거나 평소엔 하지 못했던 욕설을 하기도 한다. 물질에 의존해서 위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 후에 자괴감, 스트레스, 수치심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증가하지만, 그 물질을 떨쳐내지 못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탐닉하게 된다. 그러면서 더욱 그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며 물질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 조절에 실패하여 정신적, 신체적 문제와 함께 가족이나 친구 관계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 나아가 직장생활도 잘 유지하기 어려워져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경제적 문제도 발생하면서 나중에는 생활 전체를 중독물질이 지배하는 상태까지 발전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알코올 중독이 있다.

(2)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 문제를 진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보기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지난 일 년 사이에 있었다면 알코올 사용 장애에 해당한다.

- 실제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오랫동안 마시는 일이 빈번하다.
- 술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지만 매번 실패했다.
- 술을 사용하고 술을 깨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 술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나 욕구가 계속해서 생긴다.
- 술로 인해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 술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여가 활동을 할 수 없다.
- 술로 인해 반복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

- 신체적인 위험, 심리적 위험이 지속적으로 있음에도 술을 마신다.
- 술에 내성이 생겨서 처음 예전에 느꼈던 것과 같은 효과나 기분을 느끼려면 더 많은 양을 마셔야 하고, 같은 양을 마시면 예전과 같은 효과나 기분을 느끼지 못한다.
- 술을 안 마시면 금단현상이 나타난다. (이때 금단현상에는 우울증, 악몽 등이 동반되며, 보통 마지막 음주 후 이틀이나 사흘째 극심하게 나타난다. 금단현상 지속시 술에 대한 갈망이 지속되고 우울감 등이 강렬하게 일어난다.)

신체적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는 부정적 행동들이 많이 나타난다. 주로 다음과 같은 모습들이 한 가지 이상 나타난다.

- 혀가 꼬인다 (불분명한 말투) / 운동조절장애 / 불안정한 걸음 / 안구진탕(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안구의 주기적 운동) / 집중력 및 기억 손상 / 혼미 또는 혼수

특히 음주와 관련된 성격적 어려움에는 중독적 사고와 중독적 지각, 중독적 감정이 있다. 우선 '중독적 사고'는 음주에 대한 갈망이 증가하면서 이 갈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생각이 변하여 어떻게든 술을 마실 수밖에 없게끔 합리화한다.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혹은 과거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독적 사고가 자신의 음주에 대한 합리화를 자동적으로 지속하면서 사고를 지배하는 모습이 중독자에게서 나타난다. 특정 상황에서 꼭 그 물질이 필요하며 강박적으로 물질을 추구하는 것 역시 중독적 사고이다. 이러한 중독적 사고는 재발되기 쉬워서 교정되어야 한다. 내가 술을 마셔서 생긴 여러 어려움은 나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다. 술을 마신 것도 내 선택이고, 술을 마시고 일어난 모든 문제 역시 내 선택의 결과이다. 내가 누구 때문에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사고의 교정이 필요하다.

'중독적 지각'은 중독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회복과정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중독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지각이 왜곡되기 때문에 중독적 지각이 나타난다. 별 것 아닌 일에 분노를 느끼고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상처를 받는 것 또한 이에 해당한다. 실제 상황을 현실과 다르게 느끼면서 예민하고 까칠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은 잘못된 지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비현실적이고 지나친 낙관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중독적 감정'은 낮은 자존감과 미성숙한 감정처리 능력과 관련 있다. 중독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우울감, 수치심, 죄책감, 나 스스로 자기조절에 실패했다는 낙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다는 죄책감 등의 감정을 가진다. 그러나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도 그 행동을 더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자기처벌심리 때문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술을 마시고 민폐를 끼치면 죄책감을 느끼는 동시에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내가 하는 일의 끝은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야'라고 생각한다. 이를 자기처벌심리라고 한다. 또 자신의 감정을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면서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투사해서 '그 사람 때문에 괴롭다, 힘들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식별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깊은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나는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나는 별 것 아닌 일에 옹졸하고 왜곡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내 감정을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알코올 중독은 실제로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화재와 화상 사고의 경우에도 50%가 술과 연관되어 발생하고, 익사 사고의 경우에도 34%가 술과 연관 있었다. 범죄와 폭력 부분에서도 살인의 67%가 술과 연관이 있었고, 강간범의 50%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강간 피

해자는 30%가 음주 상태였다. 자살 사건에 있어서도 50%가 음주 후 시도한 것이다. 술을 마시면 감정이나 흥분을 조절하는 기능이 약해져서 이러한 행동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에는 전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알코올 문제를 유아기와 아동기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결과이며, 약물 사용은 이러한 갈등을 밖으로 표출하는 미성숙한 반응이라고 본다. 구강기 고착은 입으로 술을 마시으로써 좌절감과 결핍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다.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떼면 일정 기간 동안 공갈꼭지를 물리고 떼어줘야 한다. 그런데 술에 계속 집착하는 사람들은 어른임에도 여전히 공갈꼭지를 물고 있는 것과 같다. 술을 마시는 것은 상징적으로 자신의 결핍, 공허함, 좌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는 결코 채워지지 않은 것을 채우려고 하는 행위이다.

중독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마음과 방어기제를 갖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남 탓을 한다. 자기 문제를 자기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고 남에게 돌리고 남 때문에 이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변 사람 탓을 한다.

약물 남용자의 인격 특성은 수줍음이 많고, 소외되어 있으며, 참을성이 없고, 쉽게 자극에 흥분하며, 지나치게 예민하고, 좌절하며, 불안하고, 의기소침하다는 것이다. 또 타인과 관계 맺는 것이 어렵고, 자존감이 낮고, 충동적이며, 건강에 대해 무관심하고, 권력 욕구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이상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약물을 흡입하며 마음의 고통을 마비시키고 편안함과 권력감, 성취감을 느끼게 되니 계속 중독 상태가 이어진다. 또 약물중독자는 힘을 갖기를 원하고 물질이 들어가면 왜곡된 형태로 힘을 가진 것처럼 느끼며 과시적으로 공격성과 적대감을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중독적 사고나 잘못된 지각, 감정의 혼란은 악순환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중독 또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의 뇌에는 음주와 관련된 기억이나 반복된 행동에 따른 기억, 스트레스와 중독의 기억, 양육환경과 사회적 대처 사이의 기억이 저장된다. 부모가 술을 계속 찾거나 사회적으로 어

떤 일을 수행해야 하는데 감당하지 않고 도망치며 음주하는 모습이 롤모델링 되어 자녀가 그런 모습들을 답습하게 된다.

음주를 즐기면 신체적으로도 위장염, 췌장염, 뇌분비계 문제, 심혈관, 암, 출생 손실, 태아알콜증후군 등이 발생한다. 특히 알코올은 중추신경계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블랙아웃, 수면 질 저하 등도 초래한다. 알코올이 들어가면 뇌가 잠을 자지 못하며 각성하고 깨어난다. 뇌가 예민하게 깨어 있어서 더 까칠해지고 예민해진다. 판단력이 손상되고 말초신경계에 문제가 온다. 기억장애, 운동장애, 뇌세포 파괴로 인한 알코올성 치매, 정신적 어려움이 생긴다. 망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금단현상에 따른 문제가 생기며, 70대 이상에서는 금단현상으로 인한 섬망이 발생하기도 하고(일종의 정신착란으로 며칠 안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음), 췌장 계통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모두 예후가 매우 나쁘다.

알코올로 인해 뇌에도 변화가 생긴다. 술이 계속 들어가면 뇌가 수축된다. 건강한 뇌는 틈새가 없어야 하는데, 알코올로 인해 뇌가 수축되면 뇌의 틈과 틈 사이가 많이 벌어진다. 가운데 공간이 넓어지고 뇌와 뇌 사이의 균열이 커진다. 이것은 그만큼 뇌세포가 작용하지 않거나 뇌세포가 죽는다는 것이다. 치매의 핵심 기전은 뇌에 단백질 찌꺼기가 얼마나 있느냐이다. 우리 뇌는 포도당이나 단백질이 에너지원이 된다. 그러나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나면 단백질 찌꺼기가 생긴다. 건강한 뇌는 단백질 찌꺼기를 없애준다. 하지만 술을 많이 마시면 뇌가 단백질 찌꺼기를 없애주지 못한다. 이렇게 남은 단백질 찌꺼기는 단백질 거미줄이 된다. 건강한 뇌세포가 이 거미줄에 걸리면 건강한 뇌세포를 죽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치매에 걸린다. 술을 마시면 뇌세포 죽이는 일이 강화된다. 건강한 뇌는 뇌실이 좁은데 치매에 걸린 뇌는 뇌실이 넓다. 틈도 많이 벌어져 있다. 이런 것들이 그만큼 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함을 알려준다. 뇌 안에서 뇌가 활성화되지 못하게끔 하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진다. 뇌세포들은 신경전달물질을 주고받으면서 작용하는데, 전기 자극을 주고받는 것처럼 어떤 쪽의 전기 자극이 활성화되면서 생각, 감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능

력이 활성화된다. 건강한 뇌는 이것이 활성화되어 전체적으로 뇌가 골고루 활성화되는데, 알코올에 중독된 뇌를 보면 뇌의 활성화 정도가 매우 약하고 특정 부분에서만 작용한다. 이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생각이 협소해지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려준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수용할 수 없어지고 다양성을 수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제리벡은 알코올 중독 유형의 다섯 범주를 정의했다. 첫째, Alpha 알코올 중독이다. 신체적, 감정적 고통을 이완시키기 위해 그 목적으로 술을 찾고 의존하는 것이다. 내가 육체노동을 심하게 해서 술이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술을 마셔야겠다고 해서 술에 의존하는 것이다. 둘째, Beta 알코올 중독이다. 알코올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은 없이 다발성 신경장애, 위염 등의 합병증이 있다. 알코올에 취약해서 신체적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셋째, Gamma 알코올 중독이다. 심리적 및 신체적 의존이 있고 정신적·심리적 결여, 사회적·경제적 기능 결여, 알코올에 대한 내성, 금단현상 등이 있다. 노숙인처럼 사회적 기능을 잘못하면서 돈이 조금 생기면 계속 술을 먹고, 맨정신으로 지낼 수 없으니 술을 먹고 이런 식이다.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많이 나타난다. 넷째, Delta 알코올 중독이다. 신체적 의존이 특징적이거나 증상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편이다. 술을 많이 먹고 와도 출근을 잘하는 것이다. 다섯째, Epsilon 알코올 중독이다. 이는 발작적 음주광으로 술을 진탕 마시는 경우이다. 어쩌다 한 번 마시면 거하게 마시는 경우이다.

알코올 중독은 바로 중독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다. 우선 전구단계가 있고, 본격적으로 알코올 중독은 아닌 진행단계가 있으며, 그 다음에는 위기단계가 있고, 마지막 만성단계가 있다.

첫째, 전구단계에서는 불안과 긴장을 술로 대처하고 술로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술에 내성이 생겨서 술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에 도달하기 위해 전에 마신 양보다 조금 더 마시게 되어 음주량이 증가한다. 그러나 아직 이 단계는 음주

에 대한 자기조절은 가능한 상태이다. 둘째, 진행단계는 초기 알코올 중독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일시적으로 필름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술을 몰래 마시기도 하고, 은폐된 상황에서 마시고, 술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모습들이 있다. 이 단계에서는 술은 더 이상 단순히 음료가 아니다. 술은 중독자 자신의 어떤 것들을 마비시키기 위한 의식이자 약물로 사용된다. 셋째, 위기단계에서는 음주조절 능력이 없어지고 공격적 행위가 증가한다. 욕하고, 때려 부수고, 폭음으로 이어지고, 자신의 음주를 합리화하는 중대한 위기단계가 된다. 술을 마시는 빈도도 더 높아진다. 넷째, 만성단계에 접어들면 무계획적으로 연속적으로 술을 마시고, 내성이 생겨서 더 많이 마시고, 술을 마시지 않고 있을 때는 금단현상이 나타나며, 알코올로 인한 신체적 합병증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알코올 중독 문제는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예외적으로 위 단계들을 거치지 않고 아주 심각한 위기단계로 바로 진행되기도 한다. 알코올 중독이 있는 위기단계의 10대 청소년들은 몇 날 며칠씩 술을 마신다.

알코올 문제가 더더욱 위험한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알코올 중독자의 배우자는 공동의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유형은 순교자 유형이다. 그들은 내 팔자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타인들이 흥볼까 배우자가 술 마시는 것을 숨기고, 언젠가는 이 사람이 마음잡을 날이 있을 거라며 막연한 희망으로 열심히 살며 술값도 대고 하라는 대로 해준다. 거슬리면 또 술을 마실까봐 비위를 맞춰준다. 하지만 이는 술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더 크게 만든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 유형은 박해자 유형이다. 이 유형은 상대방이 술을 마시든 마시지 않든 무시하고, 신경쓰지 않고, 집안일에 대해 함께 의논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탓하는 것에 주력한다. 술 마시는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에게 이혼한다고 이야기한다. 울화가 치밀어서 자주 싸우고, 술

을 먹고 자는 배우자를 때리거나 물을 끼얹거나 자는 것을 깨워 싸움을 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더 심해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세 번째 유형은 공모자 유형이다. 이들은 상대방의 음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부정하고, 문제성 음주자의 음주 행동을 자신이 다 해결해주려 한다.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명절 때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것은 눈감아준다. 이 역시 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번째 유형은 술친구 유형이다. 이들은 알코올 문제가 있는 상대방과 같이 마신다. 이런 경우 배우자도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이미 알코올 문제가 있는 배우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자신과 함께 술을 조절하자고 하지만 결코 조절되지 않는다.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을 코아(COA : Children of Alcoholics)라고 한다. 코아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제대로 양육받지 못한다. 알코올 중독자의 양육은 혼란스럽고 일관되지 못한 양육이다. 그들은 때로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자기중심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이들을 힘들게 한다. 이렇게 양육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이중적 메시지를 던지면 문제가 생긴다. 이중구속적 메시지란 아이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고 밖에서 열심히 뛰어놀라고 이야기해서 아이는 나가려 하는데 아이의 뒤통수에 대고 집에 들어올 때 먼저 하나도 묻히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양립 불가능한 메시지를 던지면 아이는 혼란스럽다. 따라서 코아들은 내면의 혼란스러움, 불안, 수치심 등을 경험한다. 그들은 생애 전체에서 부모의 좋지 않은 모습들, 알코올에 중독되어 가정 내 불화를 일으킨 모습, 고함치는 모습 등이 원인이 되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고,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부정적 표현을 하게 된다. 코아들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고, 일반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불안과 우울 수준이 매우 높다. 또 내적 통제감이나 자아존중감이 낮아 자기차별심리가 발달하게 되어 부모와 마찬가지로 중독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과잉행동이나 정서문제, 품행문제와 품행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도 생긴다. 또래 간 문제가 심각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

하고 비행이나 일탈 등도 저지른다. 특히 일반가정의 자녀에 비해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나 약물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코아가 자라 어른이 되면 아코아(ACOA : Adult Children of Alcoholics)가 된다. 아코아들의 특징은 매우 미성숙하다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 부모로 인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중독자의 자녀로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그대로 물려받는 양상을 보인다. 아코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얻지 못하면 힘들어한다. 인내심이 부족하고 통제 불가능한 변화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을 보인다. 또 어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한다. 지속적인 인정과 확인의 욕구를 표현한다. 자신이 불확실하고 명료하지 않아서 자꾸 확인받기를 원하고, 인정에 대한 결핍이 있어서 인정투쟁을 한다. 누군가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평가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 아주 사소한 것에도 격분하고 상처로 받아들인다. 일반적인 상황에 다른 사람과 다르게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중독자가 가지는 중독적 시각을 비슷하게 갖게 된다. 지나치게 책임감을 갖거나 지나치게 무책임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고, 늘 부정적이고 심각하며 행복하지 못하다. 지나치게 누군가에게 충성하거나 지나치게 엉뚱한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이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이 컸을 때 나타나는 양상으로 많은 연구에서 보고된 내용이다.

안타깝게도 알코올 중독자의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쏟아야 할 에너지를 자신에게 쏟지 못하면서 부모를 걱정하고, 부모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안간힘을 다한다. 그러다 보면 아이가 자기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부모에게 뺏겨 커서 아코아(ACOA : Adult Children of Alcoholics)처럼 여러 문제가 생긴다. 이들이 알코올 중독인 부모와 있을 때 보여주는 모습은 가족 영웅, 위대한 아이, 희생양 등이 있다. 가족의 왜곡된 역동들을 자신이 여러 문제 행동을 통해 표출시키거나, 가족 내에서 희생양이 되어 정신적 어려움이 생기거나, 존재감 없는 잊혀진 아이, 빼제로 같은 어릿광대 역할을 하는 아이 등이 된다. 이는 다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다. 알코올 중독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배우자, 아이들도 제대로 치료하고 도움을 받아야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적절한 치료와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 부모가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거나 일관되지 않은 양육태도를 보이거나 이중구속(double bind : 상반되는 메시지가 동시에 전달되는 것), 가족 내 불화를 보이면 아이들의 자기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가 뺏겨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3) 행위 중독

행위 중독에는 대표적으로 게임, 도박 등이 있다. 물질 관련 장애와 달리 비물질 관련 장애는 약이나 술을 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예컨대 도박 중독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흥분이나 더 큰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더 많은 액수의 도박을 시도한다. 그들은 도박에 쓰는 액수를 줄이려고 하지만 줄이려 하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액수를 줄이는 것에 계속 실패하고, 도박에서 졌을 때는 돈을 땀을 때의 경험과 따기 위한 계획을 떠올리며 집착하고, 정신적 고통이 생기면 계속 도박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돈을 잃게 되면 또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도박이라는 행위를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심각한 도박 중독임을 숨기기 위해 도박하는 모습을 숨기게 되고, 도박하는 것에 투여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간관계나 직업활동에 집중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액수의 채무 상태와 같이 절망적 경제상태가 되는데 이를 벗어나기 위해 다시 돈을 빌려 도박을 반복하는 행동을 한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스키너는 행위 중독과 관련하여 한 가지 실험을 했다. 박스에 쥐를 넣어서 쥐가 한쪽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고, 다른 쪽 레버를 누르면 쥐의 뇌 중추신경계의 쾌락중추와 연결되어 전기 신호가 가서 쾌감을 느끼게 했다. 그러자 쥐는 끊임없이 쾌감을 느끼는 레버를 눌렀다. 그 쥐는 먹는 것도 잊고 죽을 때까지 쾌감을 느끼는 레버를 눌렀다. 이는 행위 중독자에게서 보이는 모습들이다. 게임 중독자도 끊임없이 게임을 하며 죽어가는 것이다. 게임 중독자도 다른 곳에서는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여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오

직 게임을 하면서만 쾌감을 느낀다. 반면 도박 중독자의 경우, 돈을 딸 때는 도파민 수치가 높아지며 쾌감을 느끼지만 돈을 잃을 때는 자기치별심리가 충족되면서 또 쾌감을 느낀다. 그래서 도박 중독자들은 죽을 때까지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도박에서 돈을 따는 경우에도, 따지 못하는 경우에도 뇌의 보상체계가 활성화되어서 도박 중독자들은 도박이라는 행동을 반복해서 하게 된다.

3. 결론

지금까지 중독의 기전, 과정, 종류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중독은 크게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이 있다. 무언가에 중독된다는 것은 강박적 행동의 양상으로 결코 스스로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적절한 의학적, 심리학적 도움을 받아서 회복해나가야 한다. 중독의 대상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이러한 중독은 자기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변인들 특히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가족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회문제 및 가정 불화의 원인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알코올 문제가 그러하다. 심한 음주는 중독자 본인에게 각종 위장염, 췌장염, 뇌분비계 문제, 심혈관, 암, 태아알콜증후군, 치매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유발한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의 배우자는 공동의존자가 되어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는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여 내적 통제감이나 자아존중감이 낮아 자기치별심리가 발달하게 되어 부모와 마찬가지로 중독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도 과잉행동이나 정서문제, 품행문제, 적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모두 불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다. 그 밖에도 행위 중독에는 게임 중독과 도박 중독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진정으로 자기감정을 느끼지도,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특정 행위만을 반복한다. 따라서 위에서 다룬 모든 정신건강 문제가 그러하듯이 왜곡된 형태나 방식으로 표출하기 이전에, 중독문제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절한 의학적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신민법 제정과 1차 가족법 개정 1948~1962

제2장 민법 초안에 드러난 불평등적 요소 (2)

1. 법적 불평등의 구체화 ②

1957년 9월 12일 본회의에 회부되기까지 65회의 회의를 거쳐 민법안심의소위원회와 법사위가 가결한 정부안-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국회 제출 정부안은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자료편 제1부 3 참조)

제4편 친족 중

- (1) 친족의 범위 : ① 8촌 이내의 종친 ② 4촌 이내의 외친 모친계 ③ 남편의 8촌 이내의 종친과 4촌 이내의 외친 ④ 처의 부모 ⑤ 배우자
- (2) 가족의 범위 : 동일 호적에 있는 자로 하되 가급적 호적을 현실적 공동생활체에 부합하도록 함 ① 직계존속이 아닌 성년남자로서 독립의 생계를 할 수 있는 가족은 호주가 이를 분가 ② 성년인 가족은 호주의 동의 없이 분가 ③ 호주의 직계의 장남자는 종가상속 및 부조(父祖)에 수반하여 거가하는 경우 이외에는 분가 ④ 서

자는 아버지 호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 ⑤ 호주는 가족의 거소를 지정할 수 있되 이에 불응하는 가족은 부양하지 않음

- (3) 호주권의 내용 : ① 특정한 입가·거가에 대한 동의 ② 가족의 거가 지정 ③ 가족의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청구권과 그 선고취소청구권 ④ 후견인이 되는 권리와 친족회에 관한 권리
- (4) 혼인 : ① 성인의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 ②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③ 가족의 혼인에는 호주의 동의 요하지 않음 ④ 약혼연령 및 혼인연령 남자 18세, 여자 16세 ⑤ 동성불혼의 관습법을 폐하고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자의 혼인만을 폐지 ⑥ 형식혼주의를 채택하여 신고로써 효력 발생토록 함
- (5) 부부 특유재산 : 남편 또는 처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및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얻은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 어느 편에 속하지 않은 재산은 남편의 권리에 존속시킴
- (6) 처의 특유재산 : 남편의 관리 또는 사용수익권을 인정하지 않음

***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이 1948년 9월 15일 구성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마련한 ‘민법 중 친족상속편’의 남녀차별적 성향을 지적하고 이의 개정을 위해 나선 데 이어 상담소는 창설 당시부터 가족법 개정운동을 주도하여 동성동본 금혼 폐지와 호주제 폐지를 관철하였다. 이러한 가족법 개정운동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률구조 사업과 나란히 상담소의 주요한 사업으로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창립 반세기를 맞은 상담소는 기존의 ‘상담소 30년사’와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를 정비하기로 하고 2009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와 『가족법개정운동 60년사』를 펴낸 바 있다.

앞서 <가정상담>에 상담소 50년사를 요약 게재한 데 이어 앞으로 상담소가 주도하여 우리나라의 주요한 역사가 된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를 연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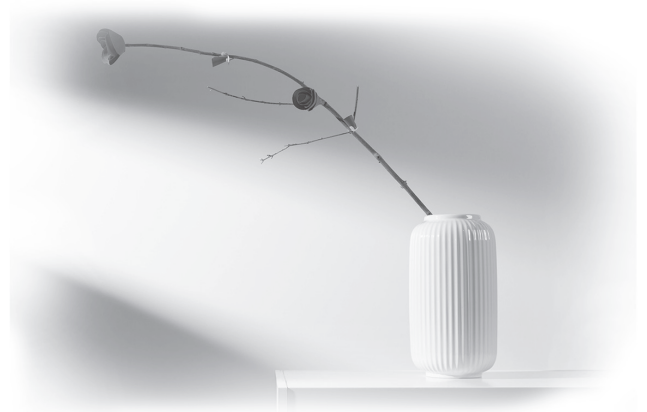
- (7) 부부동거 : 서로 협조할 의무가 있고, 동거 장소는 부(夫)의 주소나 거소로 함
- (8) 처의 행위 능력 : 처는 자기의 특유재산에 관한 행위 및 소송행위에 관하여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음. 신체의 기속을 받을 계약 또는 영업을 함에는 남편의 동의 요함
- (9) 약혼 불이행시 : 손해배상금 규정
- (10) 협의이혼 : 호적지에 대한 신고로써 효력 발생
- (11)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 : 취소에 관한 규정 정함
- (12) 재판상의 이혼 요인 :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13) 이혼시 자녀의 감호자 : 감호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불가능한 때는 법원이 이를 정함
- (14) 인지의 무효와 취소 : ① 자(子)의 인지를 한 부 또는 모는 반대의 사실을 안 때 및 인지된 때로부터 기산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인지를 취소할 수 있음 ② 자기타 이해관계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주장에 관하여도 전호에 준하도록 함
- (15) 양자제도 확장 : ‘가’의 계속을 위한 양자만을 인정하는 현행관습법을 수정하여 ‘양친을 위한 양자’ ‘여자를 위한 양자’도 인정함
- (16) 재판상의 파양 원인 규정 : ① 가문을 오독(汚瀆)하거나 가산을 경도(傾倒)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②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③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⑤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17) 호주가 된 양자의 파양을 인정하지 않음
- (18) 친권은 미성년자의 자에 대한 것으로 한함

- (19) 친권은 제1차로 부가 행사하고 제2차로 모가 행사함
- (20) 친권의 남용 또는 현저한 비행적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은 친권을 상실킬 수 있음

제5편 상속 중

- (1) 동일가적에 있는 여자인 직계비속은 남자인 직계비속의 다음 순위로 하고 동일가적에 있는 여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사후양자를 하지 못함
- (2) 재산상속인의 범위와 상속 순위 : 동일가적에 있고 없음을 막론하고 배우자 외에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근친 등의 친족
- (3) 대습상속에 관하여 : ① 대습상속은 직계비속 형제자매만에 대하여 이를 인정 ② 상속권 있는 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동일가적에 있는 유처는 재산상속 순위에 관한 ②에 의하여 대습상속권이 있도록 함
- (4) 상속분에 관하여 :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 각자의 상속분은 동등으로 하되 단 여자의 상속분은 동일가적에 있고 없음의 구별에 따라 각각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과 4분의 1로 함

편집부



부부 모두 해야 하는 일(학업)과 육아의 양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극단적 갈등 발생 행위자 상담으로 일단 봉합했으나 불씨는 여전한 경우

2021버2*** 재물손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3회,
교육강좌 4회(화상회의 플랫폼 줌
(Zoom)을 활용하여 실시),
집단상담 4회(화상으로 실시)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2회 등 총 16회

상담기간

2022. 1. 3. ~ 2022. 7. 5.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지 4년이 경과되었고 부부 사이에 1남(5세)이 있다. 부부가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위 논문을 준비 중이다. 결혼 이후 2년간 처가에서 아이를 양육해 준 이후 부부가 직접 양육을 하게 되면서 양육으로 인한 갈등이 내재해 왔다.

2021년 5월 사건당일 피해자가 지인과 통화하며 행위자 및 시가 험담을 한다고 생각한 행위자는 격분하여 고함과 욕설을 하며 4만원 상당의 체증계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고, 방문을 세게 닫아 문틀을 부수는 등 손괴하여 가정보 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되었다.

사건 이후 시가에서 아이를 양육해 주기로 했는데 피해

자는 행위자도 아이와 함께 시가로 가기를 바랐다, 그런데 아이가 집 앞에 있는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어 행위자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아내/어머니로서의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니 2021년 12월에는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행위자는 이혼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의사를 번복하였다.

초상담시 행위자는 이혼을 고려하면서도 전적으로 자신이 아이를 돌볼 것이며 피해자가 바라는 대로 아내/어머니로서의 어떠한 역할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결혼 초부터 폭언, 폭력을 하였고 남편/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혼을 고려했지만, 아이 문제 및 부부가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문을 전공하는 탓에 향후 진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이혼을 유보하였다. 상담중인 2022년 3월 행위자의 폭언, 폭력이 재발되었지만 피해자는 용서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2년 12월 제출 예정인 학위 논문 준비가 현안으로 행위자와의 충돌을 피하며 지내지만 행위자의 폭언 및 폭력성행 교정과 남편/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행위자는 성실하게 상담에 참여하였고, 피해자와의 관계 만족도를 사건당시는 10점 만점에 3점, 종결상담시는 9점으로 평가하였다. 좋아진 점으로 서로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점을 꼽았는데 특히 자신이 한 가사 활동을 비난하던 피해자가 비난하지 않는 점을 크게 평가하였다. 관계 개선의 이유로 자신이 주도적으로 가사와 육아를 맡고 피해자가 논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황이 좋아진 점도 한 이유로 꼽았다. 미래계획으로 피해자가 학위를 취득하여 자리를 잡은 후 행위자 자신도 속히 학위 취득하기를 꼽았으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바라는 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존중대화법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행위자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고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없었으며 12월 기한 내에 논문을 제출할 것을 목표로 다른 문제는 그 이후에 생각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가사와 자녀 양육의 주도적 역할은 행위자에게 맡기고 피해자는 정한 목표 실현을 위해 우선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1버2*** 특수협박, 재물손괴, 협박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2회,
교육강좌 2회(화상회의 플랫폼 줌
(Zoom)을 활용하여 실시),
집단상담 1회(화상으로 실시)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2회 등
총 11회

상담기간

2022. 1. 11. ~ 2022. 7. 10.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지 3년이 경과하였으며 부부 사이에 1남(4세)이 있다. 2021년 6월 사건당일 자녀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와 집안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본 피해자는 “쓰레기 좀 버리지”라고 말하였는데 이를 들은 행위자가 화를 내며 주먹으로 작은 방의 문 바깥 부분을 주먹으로 3회 쳐 손괴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관리하던 행위자의 태닝샵 인스타그램 계정을 폐쇄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으며 일어난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조르고 싱크대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협박하였으며, 피해자가 양가 모친에게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자 “지금 불 질러 버리겠다”라며 협박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며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되었다.

초상담에서 행위자는 본건 발생원인을 단순 말다툼이라고 하고, 폭행사실도 인정하지 않아 먼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랐기에 경제적 여유를 갖기 위해 25년간 열심히 일했다고 하면서 그로 인한 정서적, 신체적 애로점을 토로하였다. 행위자는 사건 이후 초상담시까지 폭력을 재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만족도는 사건당시나 현재 모두 10점 만점에 5점이라고 평가하였다. 부족한 점수는 타고난 성향 탓으로 서로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자신은 폭력대화를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매사 남 탓, 특히 행위자 탓을 하는 폭력대화를 하여 갈등이 깊어졌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부부간 관점이나 생각이 다른 점에 기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행위자의 장점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점을 꼽았고,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가부장성과 미흡한 분노조절 능력을 꼽았다.

행위자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상담기일을 변경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무사히 상담을 마쳤다. 다만, 피해자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나 피해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피해자 보고로도 확인되었다. 행위자에게 신체적 폭력은 물론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재물손괴 등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어떠한 폭력도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특히 피해자가 바라는 바를 강조하며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1버2***폭행 / 2021버2***특수상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3회, 집단상담 4회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화상으로 실시)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6회
부부상담 2회 등 총 15회

상담기간

2022. 1. 17. ~2022. 7. 19.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지 15년이 경과하였으며 부부 사이에 2남(15세, 8세)이 있다. 성격차이, 시가와의 갈등, 자녀문제, 남편의 음주문제 등으로 갈등이 깊어 2021년 2월부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던 중 본 사건이 발생하였다. 2021년 7월 사건당일 아이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방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아내의 목과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아내는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남편의 배와 등 부위를 각 1회씩 찌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여 부부 함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서울가정법원에서 본소에 6개월간 상담위탁되었다. 또한 아내는 6개월간 보호관찰 보호처분도 병과받았다.

아내는 본 사건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남편도 이혼에 합의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으며 보호처분 결정(2021년 12월 10일)후인 2021년 12월 29일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신고하였다. 남편을 두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였지만 큰 아들이 어머니와 살고자 하여 아내와 살고 있다. 재산은 남편 명의의 집 두 채를 매도 후 제세금 공제하고 1/2씩 분할, 자동차 매도금도 1/2씩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

아내는 재결합도 고려하였으나 남편이 재산분할에 삼촌의 개입을 방임하는 태도를 보면서 실망하고 재결합 의사를 접었다. 남편은 이혼 원인이 성격차이보다는 대화문제로, 아내의 비난/비교하는 폭력대화과 자신의 회피/공격적인 폭력대화가 결국 부부간에 대화를 하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자녀를 1명씩 양육하면서 비양육 자녀를 면접교섭하였고, 아이들 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종결상담시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이 매도되어 이사일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남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및 이행 문제를 확인하였다.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 등으로 교류가 예상되므로 두 사람 대화시 폭력대화를 하지 않기로 다짐받았다. 특히 아내는 아들의 말투에 상처를 받고 있기에 먼저 부모의 말투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025년 1월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진행 현황 〉

구분	프로그램명	날짜	참석인원	주제	강사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본소 상담위원
가정폭력행위자 성행교정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본소 상담위원
	집단상담	1/8	16명	부부관계 제1조, 살까 말까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1/15	13명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1/22	15명	회복의 여정	
	등지교실	1/8	53명	우물에 가서 송능 찾는 마음, 조바심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부모와 자녀 ② - 양자, 친양자 ⑥

● 성년자가 부모의 입양동의 없이 양자가 된 경우 부모는 입양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

Q 문 46 | 저희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집을 나가 살았습니다. 저희는 잘 키우려고 애썼는데 부모에게 서운한 것이 많았는지 연락도 끊어버려 수년간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연락이 닿아 만났는데 그동안 양부모와 살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입양동의를 한 일이 없는데 입양취소를 할 수 있나요?

A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71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부모는 양부모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84조 제1항 제1호, 제886조). 그러나 입양취소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894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양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입양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입양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사기에 의한 입양은 취소할 수 있다

Q 문 47 | 자녀 없는 먼 친척이 12살 된 우리 아이를 양자로 주면 대학까지 공부시키겠다고 하여 입양시켰더니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서 심부름만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를 다시 찾아올 수 있나요?

A 속아서 양자로 보낸 경우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귀하는 사기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입양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97조, 제823조). 이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동법 제897조, 제806조). 다만 가정법원은 미성년자가 양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884조 제2항, 제867조 제2항).

● 협박에 의한 입양은 취소할 수 있다

Q 문 48 | 자녀가 없는 노인입니다. 조카가 자기를 양자로 삼아 달라고 졸라 왔으나 그 아이의 성품이 불량하여 거절했습니다. 최근에는 양자로 삼아 주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입양했습니다만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 귀하처럼 강박에 의해서 입양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 제1항 제3호). 가정법원에 강박에 의한 입양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고 양자에



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897조, 제806조). 단 협박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97조, 제823조).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2024) 중에서



Q 6년 전 이혼하고 혼자서 조카를 키워 온 언니가 2년 전 희귀암으로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조카는 친부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친부가 친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카의 친부는 재혼해서 아이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학교에 조카를 만나러 가보면 목욕도 못한 것 같고 온몸이 멍투성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빠와 새엄마가 걸핏하면 때리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담임선생님 말로는 준비물 한번 제대로 챙겨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조카의 친부를 만나 따졌더니 아이를 키우기 싫다며 불쌍하면 저보고 데려가 키우라고 했습니다. 부모 역할을 못하는 조카의 친부, 친권을 박탈할 수 있나요?

A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제1항).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동법 제924조 제1항),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또는 2년의 범위에서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24조 제2항). 또한 친권의 일시정지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24조 제3항).

여기서 친권의 남용이란 신체적·정신적 학대,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거부, 자녀의 취학 거부, 자녀를 범죄나 성매매 등으로 유도하는 것, 자녀와 친밀한 유대관계에 있는 조부모 등 제3자와의 만남을 금지하는 것, 친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녀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 친권자로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의 복리를 해하는 것을 이릅니다. 또한, 자녀에게 적절한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지 않는 등 친권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여 자녀를 방임하는 것도 친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 및 미성년후견인선임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27조의2 제1항 제1호, 제909조의2). 이러한 것들은 친권자의 충분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그 판정의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카의 아버지를 상대로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의 선고심판청구를 한다면 위의 모든 사항들이 고려될 것입니다.

김진영 상담위원

〈슬로우 트레인〉

감독 도이 노부히로

출연 마쓰 다카코, 다베 미카코, 마쓰자카 도리, 호시노 겐, 주종혁



〈슬로우 트레인〉의 주인공은 시부야가의 세 남매 요코(마쓰 다카코 분)와 미야코(다베 미카코 분), 우시오(마쓰자카 도리 분)다. 오래전 교통사고로 부모님과 할머니를 모두 잃은 뒤 세 남매는 서로만을 의지하며 오랜 시간을 보내왔다. 장녀 요코는 얼마 전 오랜 직장인 출판사를 퇴사하고 프리랜서 편집자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서른이 넘도록 한 군데서 진득하게 정착하지 못하던 둘째 미야코가 느닷없이 한국에 가겠노라 선언하며 요코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든다. 남자친구 오윤수(주종혁 분)와 함께 부산에서 일본 가정식 음식점을 차리겠다는 것이다. 한편 철도 보수원으로 일하는 막내 우시오는 누나들에게 비밀로 하던 애인을 들키는데, 그 상대는 바로 요코의 예전 담당 작가였던 인기 미스티리 소설가 모메키 겐(호시노 겐 분)이다. 모메키는 우시오

와 함께 살길 원하지만, 우시오는 자기까지 나가면 혼자 남게 될 누나 요코가 마음에 걸려 주저한다.

지난 1월 2일 일본의 TBS 방송에서 신춘 스페셜 드라마로 방영된 단막극 〈슬로우 트레인〉은, 방영 시기와 드라마 형식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시피 현재 일본 사회가 지향하는(혹은 지향해야 한다고 은근히 설득하는) 종류의 가족상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종류의 작품이다. 〈중쇄를 찍자!〉, 〈도망치는 것은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언내추럴〉, 〈MIU404〉 등의 대히트 드라마를 연달아 발표한 인기 각본가 노기 아키코의 힘이 여지없이 발휘된 작품으로, 현재 한국에서는 왓챠, 티빙, 웨이브 등의 OTT 플랫폼에서 감상할 수 있다.

우시오와 모메키 커플에게 ‘어떻게 동성끼리 사귄 수가 있느냐’ 같은 질문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¹⁾ 다소 독선적이고 예민하며 집착이 강한 모메키와 유순한 회피형인 우시오가 관계의 확실한 정립을 두고 벌이는 의견 차이가 문제일 뿐이다. 미야코와 윤수의 경우에도 국적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야코는 어릴 때 부모님과 할머니를 한꺼번에 잃은 뒤,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며 착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큰 의미가 없지 않은가 하는 회의를 강하게 느꼈고, 또한 언니가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동생이 앞서갈 수 없다는 주저함 때문에 윤수의 프로포즈 앞에서 망설인다.

한참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리고 이끌어야 한다는 일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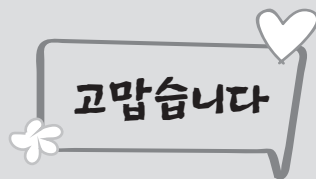
1) 일본에서 아직 동성화 합법화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지난 12월 13일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일본 전국 고법 중 세 번째(삿포로, 도쿄)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및 호적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으로 살아왔던 40대 독신 여성 요코가 느닷없이 마주하게 된 상황은, 자신이 동생들의 선택에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어찌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혼자 남은 자신을 내심 ‘안됐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갑작스런 동생들의 독립에 동요하는 요코 스스로도 자신을 초라하게, 불쌍하게 여겨야 하는가? 요코는 새로 편집을 맡게 된 책의 주제인 분석(盆石, 분 위에 돌이나 모래 등으로 자연의 풍경을 그리는 것)을 탐구하면서 ‘쓸쓸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이켜본다. 그러면서 반드시 누군가를 (소개팅 앱을 통해 서라도) 만나서 커플이 되어야만 ‘정상’으로 인정받을 거라는 불안감을 요코 자신부터 떨쳐낸다. 그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대로 자신의 일상을 제대로 꾸려가며 노동과 휴식의 적절한 분배의 균형을 찾는 작업에 집중하기로 마음 먹는다. 타인의 시선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두며 자신의 ‘정상성’을 의심하기보다는, 하루하루를 충실히 영위하며 느

리게라도 새로운 종착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요코의 인생이고 또 동생들의 인생이다. 익숙한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떨쳐내고, 한집에 모여 살아야만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구성된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체가 개인의 선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다.

신년을 맞이하여 황금 시간대에 방영한 특집 드라마에서 동성 커플과 국제 커플, ‘여성’ 독신의 문제 등을 골고루 다루며 개별적인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방영했다는 의미는 크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이 나의 삶’이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된 여러 방향들을 사회의 일부로 인정하고, 지금까지와 비할 수 없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존재함을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슬로우 트레인>의 메시지가 잔잔하게 아름다웠다.

김용언 영화칼럼니스트



2025년 1월 자원봉사자

• 야간상담을 해주신

김소이, 이승주, 황미옥 변호사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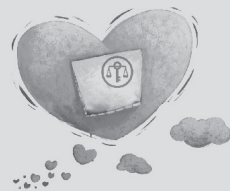
• 대학생 자원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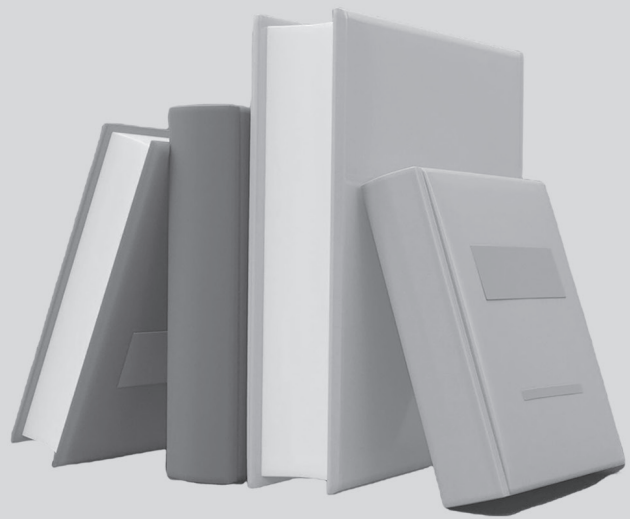
서채영, 최다은, 김민지, 조민규, 조민주, 권예지, 서현진, 신재원 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덕, 정민영, 최문원, 이현혜,
나무와 숲 심리상담센터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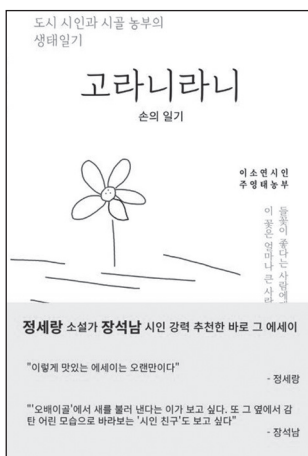


고라나라니 손의 일기

도시 시인과 시골 농부의 생태일기

이소연 시인 주영태 농부

출판사 마저, 2021(초판 2쇄)



“꺼리는 마음으로는/ 한 사람에게 단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다.” 보랏빛 오디 한 주먹을 올려놓은 손 사진 한 장, 자세히 보면 손가락 여기저기 오디 물이 들어 있다. 그리고 이소연 시인은 그 손에 대해 위와 같은 시를 썼다.

순하다 순한 눈망울의 어린 고라니 한 마리를 잡은 손, 사진에는 고라니 얼굴이 찍혀있다. 주영태 농부는 “아서라, 아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썼다. “글안해도 친한경 농사 짓는다고/ 미친놈 소릴 들어싸서 심란한데/ 고라니가 새끼까지 날아 부러서 …”

농부의 시 중에는 이런 것도 있다. 손바닥 위에 잘 자란 청 홍고추 두 개가 나란히 있는 사진에 붙인 것이다. 제목은 “자수성가 농법”, “어머이 아니 버럭지도 못 퍼묵는 것을 어찌고/ 사람 새끼들이 퍼묵는다고?/ 인자 아들이 농사짓는 거이 곧 알아주는/ 때가 온게 찌까만 지달래씨요”

정지아 작가의 『마시지 않을 수 없는 밤이니가요』는 작가의 술과 사람, 그 어떤 삶의 순간에 대한 에세이다. 한 번에 읽게 되는 재미있는 책이었다. 그 책을 읽다 발견한 사람과 책이 정지아 작가의 고창 동생이자 이소연 시인의 농부 친구로, 시인과 함께 책을 낸 주영태 농부 그리고 이 책 『고라나라니』였다. 정지아 작가는 농부의 고창 사투리에 대해서 말했는데 『고라나라니』에는 그의 정직한 손과 삶의 순간과 고창 사투리가 그대로 담겨 있다.

전라도 땅을 스물 몇 살,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가보았는데 대하소설 『태백산맥』을 읽을 때면 전라도 사투리가 입에 맴돌던 것처럼 그리고 그 소설의 한 장면에 등장하는 과일 ‘비파’에 대한 궁금증처럼 이 책에 담긴 고창 농부 삶의 장면 장면이

부럽고 좋았다. 그의 농사와 삶이 어디 하나 쉬운 구석은 없어 보였지만 말이다.

가장 친한 친구 하나는 강남 신도시에 살다가 밤낮 없이 벤처기업에서 일하던 남편과 함께 아이 둘을 데리고 귀농을 했다. 착실하게 귀농학교도 다니고 함께 학교를 마친 몇 가정과 이웃을 이루어 경기도 인근으로 갔다가 더 깊은 경상도 산골로 갔다. 그때 언젠가 만났을 때 농사짓는 이야기를 하다가 어릴 때부터 땅을 밟고 자란 아이들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오래 남아 있다. 친구는 농사를 학교에서 배운 어쩔 수 없는 도시 여자여서 땅을 만지다 커다란 지렁이를 만나면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놀고 있는 딸아이를 부른다고 했다. 그때 대여섯 살이었던 친구의 둘째는 달려와 손으로 커다란 지렁이를 잡아 다른 곳으로 옮겨 준다고, 그 이야기를 들던 우리들은 모두 땅에서 아이를 키우는, 그렇게 자라는 아이를 부러워했다.

『고라나라니』에 농부가 커다란 지렁이를 손에 든 사진이 있다. 이소연 시인이 지렁이를 보고 징그럽다고 했더니 농부가 좀 화가 난 것 같더라. 지렁이의 징그러움에 대해 낱뱀을 꼬박 새우도록 말할 수 있는 시인에게 농부는 지렁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나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며 “지렁이에 대면 우리는 그동안 땅을 버리고 살았시아.”

이 책은 이런 책이다. 불순한 시기에 읽고 또 여러 차례 뒤적이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받았다.

사진도 좋고 두 시인의 시도 좋고, 에세이도 좋다. 농부가 그 바람대로 짓는 농사가 잘 되기를, 농민회 활동도 잘 이루어지기를 비는 마음이 된다.

이숙현 편집부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연수를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본소에서 현장체험 연수를 마친 대학생들의 소감을 요약해서 싣는다.

정 준 희

동국대학교 법학과

서 연 우

동국대학교 법학과

실습과정을 신청했을 때, 무척이나 설렘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론으로만 배웠던 법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했고, 특히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돕는 것에 관심이 있어 법률구조법인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현장실습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소의 모든 일들을 체험하기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어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전화 안내를 하면서 법적인 지식과 가사 절차 관련 지식이 필요함을 느껴 가족법 관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지식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느꼈던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더불어 상담참관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진술서 작성 및 다양한 무료대서 실습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다는 것과 법이 생각보다 그들에게 친절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실습 경험은 제가 앞으로 법 공부를 하는 데에 있어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많은 질문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상담소 모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일상이 똑같아 보일지라도,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내가 경험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그 틈을 비춰주는 빛 같은 존재였다. 하루에만 수십 통의 전화가 문을 두드리고 드라마에서만 보던 상황들이 당장 눈앞에 들이닥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던 선생님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다.

그러나 나는, 실습을 시작한 첫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는 것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으며, 나의 불완전한 지식으로는 내담자에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컸으나 선불리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 이는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겠다는 원동력이 되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처음 보게 된 그 틈은 어느새 지나칠 수 없는 무언가가 되어 일상의 변수로 자리 잡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틈을 메워 누군가의 일상을 평화롭게 되돌려놓는 것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 오늘도 정진하고자 다짐해 본다.



본소 교육부, 전국 교사 대상 교원직무연수

본소 교육부는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부산광역시에 근무하는 전국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법과 생활」 교원직무연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에서는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아동복지법, 가정폭력 관련 법률,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신용회복제도,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강의 후에는 교육현장 및 실생활에서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질의응답도 이루어졌다. 수강생들은 연수와정이 학교에서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되었으며, 다소 어려웠지만 가정 및 실생활과 관련하여 법적 전문 지식을 사례 중심으로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덧붙여 앞으로도 본소의 교원직무연수가 지속적으로 개설되길 바라며, 주변 교사들과 교육기관에 본 연수를 소개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하였다.(관련사진 2번)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상담소 도서실에 <문학나눔> 도서 기증



지난 1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문학나눔> 도서 100권을 상담소 도서실에 기증하였다. <문학나눔> 사업은 출판사의 양서 출판 의욕을 고취하고 국민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문학나눔> 도서는 주로 문학 및 에세이

로 구성되어 본소 도서실의 다양한 장서 구성에 기여하고, 이용자들의 문학 접근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소 도서실에서는 이번에 기증받은 도서들을 잘 관리하여 향후 가치 있게 활용할 예정이다.

무료공개강좌, 등지고실 열려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위해,
매월 현장 강의로 진행

지난 1월 8일 본소 8층 강의실에서 개인과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등지고실」이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다가 다시 현장 강의로 전환하여 처음 열린 것으로 이서원 대표(한국감정케어센터)가 ‘우물에 가서 송능 찾는 마음, 조바심’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강사는 조바심은 초조한 마음으로 자신이 좀 더 나은 상태가 되고자 하는 소망에서 비롯되므로 조건이 무르익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현실을 자각하여 느긋함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소통의 부재로 인간관계가 어려운 요즘 시대에 조바심 대신 호감으로 따뜻한 질문을 건네며 소통하는 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다음 강의는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드는 마음, 답답함’을 주제로 2월12일 본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원하는 사람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진행 중이다.

동국대학교 법학과

서연우, 정준희 (2024. 12. 30.-2025. 1. 27.)

이화여대

권윤아, 배예은 (2025.1.2.-2025.2.28.)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박효원, 고현희, 김지은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월 8일과 15일, 22일에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사건을 조정하였다. 14일에는 화상으로 진행된 본소 교원직무연수에서 ‘가족법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이혼에 관한 법률’ 등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월 10일과 24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혼인취소, 이혼등 사건을 조정하였다. 15일에는 2024년도 하반기 본소 교원직무연수에서 상속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2025년 1월 상담통계

총 건수 3,870

법률상담 (3,325)

면접	전화	인터넷
898	2,317	110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479	41	25

• 인터넷 정보 이용 93,937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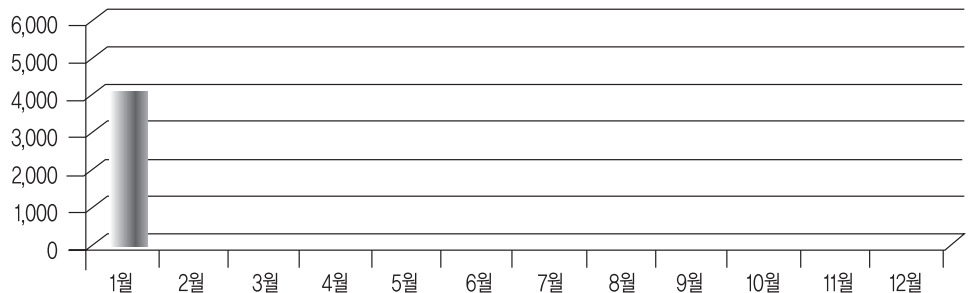
2025년 1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3,870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3,325건(85.9%), 화해조정 479건(12.4%), 소장 등 서류작성 41건(1.1%), 소송구조 25건(0.7%)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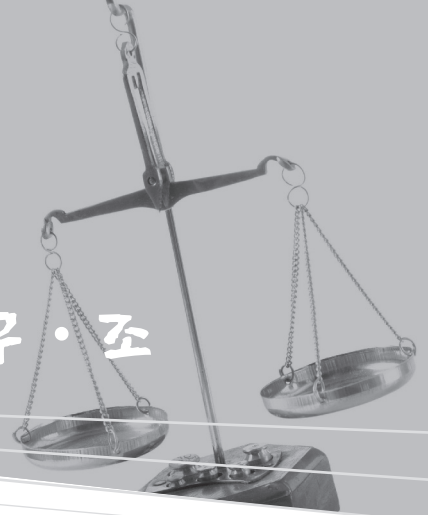
법률상담 3,325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4년 12월에 비해 남녀관계(0.2%→0.4%), 부부갈등(3.8%→4.9%), 위자료·재산분할(5.0%→6.2%), 친권·양육권(4.0%→4.2%), 양육비(6.9%→8.2%), 면접교섭권(1.2%→1.4%), 인지(1.3%→1.8%),

친생부인(0.8%→1.0%), 친생자존부(1.2→1.6%), 입양(0.9%→1.4%), 파혼(0.1%→0.4%), 혼인무효·취소(0.4%→0.5%), 유언·상속(8.5%→9.9%), 가족관계등록부(2.9%→3.3%), 개명(0.8%→1.2%), 성년후견(2.0%→3.5%), 가사기타(16.3%→18.1%), 부동산(0.1%→0.2%)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3,325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898건(27.0%), 전화상담 2,317건(69.7%), 인터넷상담 110건(3.3%)이었다.

2025년
월별
총건수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연락 두절 된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위탁모인 조모를 아동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법률구조 2024-1-131

담당 : 장성민 변호사

사건명 : 친권상실신고 및 미성년후견인선임

내용 : 청구인(여, 50대)은 사건본인들(여, 남, 각 10세 미만)의 조모이고, 상대방(여, 30대)은 사건본인들의 친모이다.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친부와 함께 청구인의 집에서 생활하다 2019년 사건본인들의 친부가 사망하자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집을 나갔다. 이후 사건본인들의 양육은 청구인 부부가 전담하였다. 상대방은 집을 나간 후 두 차례 정도 찾아왔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 되었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집을 나간 이후 2020년 사건본인들에 대한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으나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인 상대방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향후 사건본인들을 위한 사무처리에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건본인들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4. 12. 9.)

1. 상대방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2025. 2. 28.까지 사건본인들의 재산 목록(기준일: 2024. 11. 30.)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2025. 12. 31.을 시작으로 매년 12. 31.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매년 11. 30.)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들을 대리하여 사건본인들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상속의 포기, 단순 승인 또는 상

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도박 등으로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키고
연락 두절 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4-1-283

담당 : 원의림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0대)와 피고(남, 60대)는 2015년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원고는 2008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어 교제한 후 2011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다. 2013년경 피고는 지방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간헐적으로 서울 집에 들렀다가 떠나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고는 원고 모르게 원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였다. 이후 피고는 본인이 신용 불량자라는 이유로 원고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후 할부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의 전혼자녀의 명의로도 차량을 구매한 후 할부금을 갚지 않다가 제3자가 해당 차량의 명의를 이전받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원고의 주택 청약 적금 통장이 압류되었고 결국 원고는 적금을 해지하고 피고의 대출금을 상환하기까지 하였다. 피고는 혼인 중 원고 아닌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2023년 추석 무렵부터 연락이 두절 되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4. 12. 1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25년 2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 ▶ 일시 : 매주 평일 상시
- ▶ 강사 : 본소 상담위원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5년 7월 10일, 11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방법 및 장소 : 대면강의, 본소 8층 A 강의실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 의 제 목
7월 10일	인간의 마음, 사랑과 분노
11월 13일	갈등의 해소와 함께 살아가는 법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 관련 법률·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5년 8월 중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등지교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 행 : 이서원 대표(한국감정케어센터)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 정	강 의 제 목	강사
2월 12일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드는 마음, 답답함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3월 12일	내가 한 것보다 적게 받을 때 드는 마음, 섭섭함	
4월 9일	뒤늦게 오는 깨달음, 후회	
5월 7일	나에게 잘 한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드는 마음, 미안함	
6월 11일	모든 것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은 하나를 찾는 마음, 다행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7월 9일	부리에 가해진 충격, 아동기 정신건강	
8월 13일	과도한 자기중심성, 자기애성 성격장애	
9월 10일	균형의 상실, 경계선 성격장애	
10월 15일	누적된 스트레스의 범람, 공황장애	
11월 12일	시간의 멈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12월 10일	끝없는 도피, 중독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 연수기간 : 2026년 1월 13일(화) ~ 15일(목), 1일 5시간, 3일간
- ▶ 이수시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전국 초·중·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 교과과정
 - 가족법 :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혼인 관련 법률
이혼 관련 법률 / 부모·자녀 관련 법률 / 후견 관련 법률 / 상속·유언·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법률

※ 교육일정 및 강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우리 가족 행복캠프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상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시 ▶

2025년 8월 중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8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8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